

M45-29 / 2003. 1

월간  
세계농업뉴스

제29호 (2003년 1월)

『세계농업뉴스』는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http : //www.krei.re.kr](http://www.krei.re.kr))의  
『세계농업정보』사이트에 게재된 자료를 월간으로 발행한 것입니다.  
자료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김태곤 taegon@krei.re.kr

TEL 02-3299-4241 / FAX 02-968-7340

# 목 차

## I. 농업 농정 동향

1. 중국, WTO 가입후 농산물 품질관리 강화 ..... 3
2. 중국, 사과산업 북미시장 진출 ..... 7
3. 중국, 낙농산업 생산동향 ..... 9
4. 중국, 농업법 개정 ..... 11
5. 중화인민공화국 농업법(전문) ..... 13
6. 대만, 쌀 수출확대 가이드라인 결정 ..... 40
7. 호주, 한발 영향으로 곡물생산 대폭 감소 ..... 42
8. 미국, 호주와 FTA 체결시 농산물 예외처리 ..... 44
9. 미국, 농가재해지원대책 강화 ..... 51
10. 브라질, 중국에서 옥수수 100만톤 수입 ..... 62
11. EU, 2002년도 농업소득 3% 감소 ..... 64


## II. 국제기구 논의동향

- WTO 농업모델리티 협상동향 (6) ..... 69

## III. 세계 식료수급 정보

- 세계 곡물 수급 동향과 전망(2003. 1) ..... 79

## IV. 통계자료 ..... 89



## 농업 농정 동향

---

중국, WTO 가입후 농산물 품질관리 강화

중국, 사과산업 북미시장 진출

중국, 낙농산업 생산동향

중국, 농업법 개정

중화인민공화국 농업법(전문)

대만, 쌀 수출확대 가이드라인 결정

호주, 한발 영향으로 곡물생산 대폭 감소

미국, 호주와 FTA 체결시 농산물 예외처리

미국, 농가재해지원대책 강화

브라질, 중국에서 옥수수 100만톤 수입

EU, 2002년도 농업소득 3% 감소

## 중국, WTO 가입후 농산물 품질관리 강화

중국은 WTO 가입후 채소, 과일 등 원예농산물의 수출확대를 목표로 농산물의 무공해 생산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다.

WTO 가입에 따라 농산물의 무역량은 수출·수입 모두 대폭으로 증가하여 중국의 비교우위가 있는 원예작물이나 축산물은 수출확대의 절호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수출채소 등은 품질과 위생기준면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예상만큼 수출을 할 수 없었다.

중국의 농산물은 외국시장에서는 ‘싼 것’이라는 이미지가 강하다. 싼 노임으로 생산한 것이기 때문에 가격경쟁상 유리한 위치에 있지만, 품질이 안전, 양질이 아니면 팔리지 않는 한계를 안고 있다. 지금까지 중국의 농산물생산체제는 품질관리를 중시하지 않고, 수량적인 증가를 강조할 뿐이었다. 더욱이 생산자의 규모가 작고, 영세한 개인경영이며, 농가의 협동조합조직이 그다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산단계에서 규격과 품질관리에는 많은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었다.

### 1. 무공해 식품프로젝트의 추진

최근 2~3년간 식품의 안전위생문제가 제기되어 중국 국내에서도 사회적으로 주목하는 관심사가 되고 있다. 특히 수출 농산물에 대해서 품질저하나 검역 불합격이라는 문제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농산

물의 안전성과 위생관리를 엄격하게 강화하고 있다.

이미 2001년 4월부터 북경, 천진, 상해, 심천 등 4개 도시를 모델사업도시로 지정, ‘무공해식품프로젝트(무공해식품 행동계획)’를 실시하고 있다. 생산기준의 제정, 시장으로 출하하는 채소의 잔류농약검사 등 시민에게 ‘放心菜(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채소)’를 공급하는 시스템을 만들기 시작하였다. 2002년 4월 중국 농업부와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은 정부의 ‘무공해농산물관리방법’을 공포 하였으며, 더욱이 7월에 농업부는 ‘무공해식품프로젝트’를 전면적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전국 규모로 확대 실시하도록 지시하였다.

## 2. 수출기업의 대책

중국에서 최대의 농산물 수출기지인 산둥성에서는 다수의 가공수출기업이 WTO 가입후 수출 확대를 기대하였지만, 채소 잔류농약이나 닭고기 항생물질 검출 등 잇달아 수입국의 엄격한 관리조치로 일부 품목의 수출량이 대폭 감소, 기업은 큰 타격을 받고 있다. 현재 이러한 수출산지에서는 품질관리 강화(HACCP 인증, 품질검사기구 구입, 환경개선 등)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가공기업과 원료생산농가 사이에서 수직적 일관 관리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중점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더욱이 수출중견기업은 추적가능성(traceability) 시스템의 도입도 고려하고 있다. 수출기업은 이러한 일련의 대책으로 수출품목의 품질향상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수출품의 신뢰회복과 지속적인 수출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또, 기업 중에서는 하나에 집중적으로 수출하는 기존의 전략을 개선하여, 아세안 제국 등 복수 국가로 진출하는 전략전환을 도모하고 있다.

### 3. 외국계 슈퍼의 진출

유통분야에서는 외국계 기업의 진출해금을 단계적으로 실행하고 있으며, 대도시에서는 외국계 슈퍼마켓이 이미 소매업의 선두그룹으로 뛰어나고 있다. 외국소매업자는 독자의 상품관리 테크닉 및 경영전략을 가지고 있어 중국 기업에 자극을 주어, 그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다. 미국계 월마트, 프랑스계 까르푸, 일본계 이토요카드 및 자스코 등이 중국의 대도시에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이토요카드는 1998년 북경시에서 1호점을 개설하여, 2001년 11월 올림픽타운 근처에서 2호점을 오픈하였다. 청도시에서는 자스코와 카르푸가 1.5km 정도의 근거리에 각각 점포를 설치, 손님을 끌기 위한 판매경쟁을 하고 있다.

이러한 점포의 식품코너에는 무공해식품, 녹색식품, 유기식품의 표시라벨을 붙인 팩 채소가 특히 많으며, ‘안심하고 소비하는 식품’이라는 점포 홍보도 하고 있는데 그 대부분이 계약 산지로부터의 직거래 상품이다.

최근 대형수퍼 등 양판점이 늘어남에 따라 시장의 유통비율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거래가 확대됨에 따라 특히 식품의 안전성 문제를 배려하여 직거래 방식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다. 양판점과 산지와의 계약 거래시에 위반자에게 벌금 및 입하금지 등 엄격한 벌칙이 명기되고 있기 때문에 산지에서 계약위반의 경우에 받는 위험부담을 피하기 위하여 식품의 위생안전에 충분히 배려하고 있다.

#### 4. 잔류농약의 개선조치

중국 정부는 1997년 ‘중화인민공화국 농약관리조례’를 시행하고, 그 후 ‘농약관리조례실시방법’, ‘농약안전사용규정’ 등의 법률 및 ‘농약안전사용기준’, ‘농약합리사용준칙’ 등 국가기준을 제정하였다. 2002년 5월에는 국가농업부공고(제199호)의 형태로 전면사용금지농약(18품목), 채소, 과수, 한방약에 대한 사용금지농약(19품목), 밭작물에 대한 사용금지농약(21품목) 등의 리스크를 공표하여, 농약의 사용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을 엄격히 추궁하는 시책을 강구하고 있다.

더욱이 2002년 7월 농업부는 ‘농약잔류감시, 검사를 강화하는 통달’을 각 성·시에 배포하고, 그 중에서 도매시장에도 잔류농약의 검사제도를 도입할 것을 밝혔다. 농산물의 잔류농약문제는 이와 같은 일련의 대책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향후 그 성과가 수출확대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자료: JETRO, Food & Agriculture, no.2415(2002. 12. 2)에서  
(김태곤 taegon@krei.re.kr 02-3299-4241 농정연구센터)



## 중국, 사과산업 북미시장 진출

중국은 세계 최대의 과일 생산국이다. 과거 중국의 과일은 가격이 저렴하고 품질과 산업화 정도가 낙후되고 정보도 부족하여 국제시장에 진입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WTO 가입후 중국 과일은 중요한 농산물로 등장하여 국내외 시장에 광범하게 진출, 국내는 물론 국외 소비자에게도 환영을 받고 있다.

1992년부터 중국은 세계 사과 생산대국인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를 차지하였다. 2000년 전국 사과 재배면적은 225만ha, 생산량은 2,043만톤에 달하여 과수 총재배면적과 총생산량의 각각 25%, 33%를 차지하였다. 이는 세계 사과재배면적과 총생산량의 40%와 34%를 차지한다. 사과의 국내 총생산액은 346억 위안으로서 이는 전국 과일 총생산액의 43.3%를 차지하는 규모이다.

전문가 예측에 의하면, 향후 5~10년후 중국의 사과 생산량은 3,000만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 신선사과 수출은 200만톤, 사과 농축액 수출량은 20만톤을 초과할 것이라고 한다. WTO 가입후 사과는 중국에서 국제경쟁력이 높은 농산물 중의 하나로 자리잡고 있다.

최근 산시성(陝西省) 화성(華聖)그룹은 200톤의 부사 사과를 시안(西安)에서부터 캐나다 수출에 성공하였다. 이는 중국의 사과가 드디어 국제적으로 중요한 북미시장 개척에 성공하였다는 의미이다.

화성(華聖)그룹의 이따썬(李大仙) 이사장은 북미도 사과 주산지이지만

이 곳 소비자들은 중국 황토고원에서 수입된 신선한 사과를 먹을 수가 있다는 것은 중국 사과가 세계무역경쟁에 참가할 능력을 갖추었다는 의미라고 언급하고 있다. 그는 또 중국 사과산업의 국제시장 진출이 한층 가속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토고원은 세계적으로 아주 적합한 사과생산지역으로 여기서 생산된 사과는 세계 생산량의 7%에 달한다. 이 지역에서 생산된 사과의 품질은 국내외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 최근 산시성의 과수산업은 산업화경영이 가속화되고 있고, 또 저잔류농약사용, 무공해생산기술보급 등과 같은 노력으로 유럽을 비롯하여, 중동, 동남아 등 20여개 국가에 사과를 수출하고 있다.

국제시장의 활발한 개척을 위해 산시성에서는 2000년부터 국가품질감독검험총국 등 유관부문의 협조를 받아 사과의 캐나다 수출사업을 위해 노력해왔다. 현재 화쌍그룹 등 두 개 기업이 캐나다 사과수출자격을 획득하였다. 화쌍그룹의 캐나다 사과수출 성공은 중국의 대중 농산물인 사과가 북미 선진국의 기술장벽을 넘어 선 것이며, 이로써 미국시장 진출의 기초를 마련하였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자료 : <http://www.ap88.com>(중국농업네트워크)에서  
(김태곤 taegon@krei.re.kr 02-3299-4241 농정연구센터)

## 중국, 낙농산업 생산동향

미국 농업부(USDA) 해외농업국(FAS)은 최근 중국의 낙농산업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 중에서 낙농부문 생산개요를 요약한다.

### 1. 2001년도 우유 생산량 대폭 증가

2001년도 중국 우유 생산량은 도시부를 중심으로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 증가 등으로 생유·유제품의 소비가 대폭 늘어나고 있는 것을 배경으로 전년을 23.9% 상회하는 1,025만 5,000톤으로 증가하였다. 도시지역의 1인당 우유 소비량은 전년대비 19.7% 증가한 11.9kg에 달하고 있다.

### 2. 흑룡강성이 전국의 22.8% 차지

중국의 낙농은 동북지역과 북경, 상해 등의 대도시 주변이 주요 생산지역이다. 최대 우유 생산지역은 흑룡강성으로 2001년은 전년대비 22.5% 증가한 192만 4,000톤에 달하며, 전국에 차지하는 점유율도 전년보다 4.2% 포인트 증가한 22.8%가 되었다. 여기에 북경에 인접한 하북성이 뒤를 이어 2001년은 전년대비 27.6% 증가한 107만 4,000톤, 점유율은 전년보다 2.8% 포인트 증가한 13.0%가 되었다. 또, 최근에는 사천성, 신장지구를 비롯한 서부지역에서도 급성장하고 있다. 요인은 중국 정부가 이러한 지역에서 낙농진흥을 강구하고 있는 결과이다.

표 1 중국의 우유생산량 전망

단위: 천톤, %

	2001년	전년대비	2002년	전년대비	2003년	전년대비
우유생산량	10,255	+23.9	11,075	+8.0	11,961	+8.0

자료: 미국 농업부(USDA) 해외농업국(FAS)

주: 2002년 및 2003년은 전망치

### 3. 2002년, 2003년도 각각 8% 증가 전망

2002년도와 2003년도 우유 생산량은 수요가 꾸준히 상승될 것으로 전망되어 각각 8.0%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한편, 중국에서는 조사료 및 물 부족이 낙농업의 성장을 제약하고 있다. 홀스타인 등 이른바 순수 유용종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유용우의 절반 이하에 불과하며, 이 외에는 중국 재래종인 황소와의 교잡종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유전형질의 향상이 생산확대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낙농은 중국의 제10차 5개년 계획에서 중점과제의 하나이다. 중국 정부는 최근에는 수정란 이식을 활용한 젖소개량사업(1만개 수정란 프로젝트)을 실시하고 있다.

### 4. 유제품 공장수는 1,500개로 증가

원유·유제품의 소비확대로 유제품 공장수는 현재 1,500개소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1일당 처리량은 비교적 소규모이다. 약 55%의 공장이 20톤 이하이며, 1,000톤을 넘는 공장은 5%에 불과하다. 한편, 중국의 유제품 시장에는 그 수익성의 매력에서 외국계 기업의 투자도 늘어나고 있으며, 2001년에는 기업수가 전년도 45개사에서 51개사로 증가하고 있다.

자료: <http://www.lin.lin.go.jp/alic/month/fore/2002/dec/top-sp0.4.htm>에서  
(김태곤 taegon@krei.re.kr 02-3299-4241 농정연구센터)

## 중국, 농업법 개정

중국 정부는 2002년 12월 28일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31차 회의에서 농업법을 개정하였다. 이 법은 1993년 7월 2일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제정되었다.

제9기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31차 회의에서는 지난해 12월 28일 개정된 농업법을 통과하였다. 국가 주식 짙저민은 제81호 주식령에 서명하여 이 법률을 공포하였다.

개정된 농업법은 전문은 약 13,000자로서 총13장 99조로 되어있다. 농업법은 총칙, 농업생산경영체제, 농업생산, 농산품유통과 가공, 식량안전, 농업투입과 지지보호, 농업과학기술과 농업교육, 농업자원과 농업환경보호, 농민권익보호, 농촌경제발전, 법률집행감독, 법률책임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취지는 개혁개방의 성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따라 중국의 농업과 농촌경제발전은 새로운 단계에 진입하여 새로운 상황과 새로운 문제들이 대두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정된 것이다. 예를 들면, 전통적인 농업관리모델들은 현재 형세에 적합하지 않으며 부분적인 농산품은 단계별로, 구조별로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었다. 또, 농업 구조조정도 시급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었다.

한편, 농민소득성장의 침체는 농촌의 소비성장을 제약하였을 뿐만 아니

라 국민경제의 발전에도 제약을 주었다. WTO 가입은 또한 새로운 조치로서 농업발전수준을 높이고 농산품 국제경쟁력을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형세가 농업법의 개정을 요구하게 된 것이다.

새로 개정된 농업법은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수정되고 보완되었다. 즉, 국가에서 공동소유제도를 주체로 하고, 여러 소유제 경제가 공동으로 발전하는 기본경제제도를 견지하여 안정시키고, 농촌경제를 진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가는 과학교육으로 농업을 활성화하고, 농업의 지속발전 가능한 방침을 견지하고, 농민과 농업생산경영조직의 재산 및 기타 합법적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자료: [http : //www.agri.gov.cn](http://www.agri.gov.cn)에서  
(리 금 leekum@hanmail.net 02-521-6503 세계농정연구원)

## 중화인민공화국 농업법(전문)

1993. 7. 2 제8차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 2차회의 통과

2002.12.28 제9차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31차회의 통과

‘중화인민공화국농업법’은 2002년 12월 28일 중화인민공화국 제9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1차 회의에서 수정 통과되었으며, 수정된 법률은 금일 발표하고,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강택민

2002년 12월 28일

### 목 차

- 제 1장 총칙
- 제 2장 농업생산경영체
- 제 3장 농업생산
- 제 4장 농산물유통과 가공
- 제 5장 식량안전
- 제 6장 농업투입과 지지보호
- 제 7장 농업과학기술과 농업교육
- 제 8장 농업자원과 농업환경보호
- 제 9장 농민권익보호
- 제10장 농촌경제발전
- 제11장 법률집행감독
- 제12장 법률책임
- 제13장 부칙

## 제1장 총칙

**제10조** 농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기초지위를 강화하고 공고화하며, 농촌개혁의 심화, 농업생산력의 발전, 농업현대화의 추진, 농민과 농업생산경영조직의 합법적인 권익보호, 농민수입의 증대, 농민의 과학문화수준 향상, 농업과 농촌경제의 지속·안정·건강한 발전을 기하는 한편, 전면적인 小康社會를 실현하기 위하여 본 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법의 농업은 裁植業, 임업, 축산업과 어업 등 산업을 말하며, 이와 직접 관련된 생산 전·중·후의 서비스를 포함한다.

본 법의 농업생산경영조직은 농촌집체경제조직, 농민전업합작경제조직, 농업기업 및 기타 농업생산경영에 종사하는 조직을 말한다.

**제3조** 국가는 농업을 국민경제발전의 首位에 둔다.

농업과 농촌경제발전의 기본목표는 사회주의 시장경제가 필요로 하는 농촌경제체제를 적절하게 발전시키며, 농촌생산력을 부단히 개혁 발전시키고, 농업의 전체적인 수준과 효율을 제고하는 동시에, 농산물의 수급과 품질을 확보하고, 국민경제발전·인구증가·생활개선 수요를 만족시키며, 농민의 수입과 생활수준을 제고하고, 농촌 잉여노동력을 농업 외 부분과 도시로 이전시키며, 도농간·지역간 격차를 축소시키고, 풍요·민주·문명의 사회주의 신농촌을 건설하는 한편, 농업과 농촌의 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실현하는 것이다.

**제4조** 국가는 농업이 식량·공업원료·기타 농산물 공급을 보장하고, 생태환경을 보호·개선하며, 농촌경제사회발전을 촉진하는 등 다방



면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제5조** 국가는 公有制를 주체로 하면서 다양한 소유제 경제가 함께 발전하는 경제제도를 견지·완성시키고 농촌경제를 진흥시킨다.

국가는 가정승포경영을 기초로 쌍층경영체제를 결합하여 농촌을 장기적으로 안정화시키고, 사회화서비스체계를 발전시키며, 집체경제 역량을 강화하여, 농민이 공동으로 부유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인도한다.

국가는 농촌에서 노동에 따른 분배를 위주로 다양한 분배방식이 병존하는 분배제도를 유지·완성시킨다.

**제6조** 국가는 과학기술진흥과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침을 견지한다.

국가는 농업과 농촌 기초시설 건설을 강화하고, 농업과 농촌경제구조를 조정하여 우량화시키며, 농업산업화경영을 촉진시키고, 농업과학기술·교육사업을 발전시키며, 농업생태환경을 보호하고, 농업기계화·정보화를 촉진하며, 농업종합생산능력을 제고시킨다.

**제7조** 국가는 농민과 농업생산경영조직의 재산 및 기타 합법적인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보호한다.

**제8조** 전 사회는 농업을 중시하여야 하며, 농업발전을 지지해야 한다.

국가는 농업과 농촌경제를 발전시킴에 있어 뚜렷한 성과가 있는 기구와 개인에 대하여 포상한다.

**제9조** 각급 인민정부는 농업과 농촌경제발전사무에 같은 책임을 갖으며, 조직의 각 관련부문과 전 사회는 농업발전과 농업서비스를 발전시키기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한다.

국무원농업행정주관부문은 전국의 농업과 농촌경제발전사업을 주관하며, 국무원임업행정주관부문과 기타 유관부문은 각각의 직

무범위 내에서 관련된 농업과 농촌경제발전업무를 책임진다.

현급이상 지방인민정부의 각 농업행정주관부문은 당해 행정구역 내의 종식업, 축목업, 어업 등 농업과 농촌경제발전 사무를 책임지고, 임업행정주관부문은 당해 행정구역 내의 임업사무를 책임진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의 기타 관련 부문은 각각의 직무범위 내에서 당해 행정구역내 관련 농업과 농촌경제발전업무를 책임진다.

## 제2장 농업생산경영체제

**제10조** 국가는 농촌의 토지승포경영체제를 실시하여, 농촌토지승포관계의 장기적인 안정을 법률로 보장하고 농민의 승포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보호한다.

농촌토지승포경영의 방식, 기한, 승포권 계약당사자의 권리·의무, 토지승포경영권의 보호와 이전 등에 대하여는 ‘중화인민공화국토지관리법’과 ‘중화인민공화국농촌토지승포법’을 적용한다.

농촌집체경영조직은 가정승포경영의 기초 위에서 집체자산을 법률로 관리해야하며, 그 구성원에게 생산·기술·정보 등 서비스를 제공하여 집체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이용토록 함으로써 경제력을 확대한다.

**제11조** 국가는 농민이 가정승포경영의 기초 위에서 스스로 각종 전업합작경영조직을 구성하도록 지지한다.

농민의 전업합작경영조직은 구성원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전제와 스스로 가입하고 자유로이 탈퇴하며 민주적인 관리, 이익을 반환한다는 원칙에 따라, 법률로 그 규정 범위 내에서 농업생산경영과 서비스활동을 실시한다.

농민의 전업합작경영조직은 다양한 형식을 취할 수 있으며, 법률로 설립하고 등록한다. 어떠한 조직과 개인도 농민전업합작경영

조직의 재산과 경영자주권을 침해할 수 없다.

**제12조** 농민과 농민전업합작경영조직은 민주적인 관리와 노동에 의한 분배 및 주식권리에 의한 분배 원칙에 따라 스스로 자금·기술·물자 등을 주식화 할 수 있으며, 각종 기업은 법률로 진흥된다.

**제13조** 국가는 여러 가지 형식의 농업산업화경영이 발전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 농민과 농민전업합작경영조직이 생산·가공·판매 일체화 경영을 할 수 있도록 고무하고 지지한다.

국가는 농산물 생산·가공·유통서비스에 종사하는 기업·과학연구단위 및 기타조직을 인도·지지하여, 농민 또는 농민전업합작경영조직과 계약 또는 각종 기업을 건설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함께 나누고 위험을 공동부담하는 이익공동체를 구축함으로써 농업산업화경영을 추진하여 농업발전을 촉진토록 한다.

**제14조** 농민과 농민전업합작경영조직은 법률·행정법규에 따라 각종 농산물 전문협회를 설립하여 조직원에게 생산·경영판매·정보·기술·교육 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농산물무역부문 규제조치를 신청하여 구성원과 협회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

### 제3장 농업생산

**제15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의 중장기계획·농업과 농촌경제발전의 기본목표 및 농업자원구역계획에 근거, 농업발전계획을 작성한다.

성급 이상 인민정부 농업행정주관부문은 농업발전계획에 근거, 지역적 우세가 발휘되고 합리적인 농업생산구역분포가 되도록 추진함으로써 농업과 농촌경제구조조정을 지도하고 협조한다.

**제16조** 국가는 농민과 농민전업합작경영조직이 결합하여 당해 지역의 실질 시장수요에 근거하여 농업생산구조를 조정하고 우세화 시키도록 하며, 종식업·임업·축목업과 어업을 조정발전시키고 고품질·고생산성·고효율의 농업을 발전하며, 농산물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도록 지도하고 지지한다.

종식업은 우량품종·품질제고·효익증대를 위주로 작물구조·품종구조 및 품질구조를 조정한다.

임업생태건설을 강화하여 천연림보호와 退耕還林, 防沙治沙사업을 추진한다. 방호림체계 건설을 강화하여 속성수·공업원료림·연료림 건설을 촉진한다.

초원보호건설을 강화하여 축목업발전을 가속화하며 울타리사양과 축사사양을 보급하고 가축 품종을 개량하고 사료공업과 축산물가공업을 적극 발전시킨다.

어업생산은 어업자원을 보호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하며 포획구조를 조정하고 수산양식업·원양어업·수산가공업을 적극 발전시킨다.

현금이상 인민정부는 정책을 마련하고 자금을 안배하여 농업구조조정을 유도하고 지지해야한다.

**제17조** 각급 인민정부는 농업종합개발과 農田水利, 농업생태환경보호, 향촌도로, 농촌에너지와 전기, 농산물비축과 유통, 항구, 초원울타리, 동식물 종자기지 등 농업과 농촌기초시설 건설을 강화하고 농업생산조건을 개선하며, 농업종합생산능력을 보호하고 제고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8조** 국가는 동식물품종의 선발·육종, 생산, 갱신 및 우량종자의 보급·사용을 지원하며, 품종선발육종과 생산, 경영을 상호결합하여 ‘종자공정’ 및 ‘축금양종공정’을 실시한다.

국무원과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는 전문자금을 마련하여, 동식물우량종자의 선발육종과 보급사업에 사용한다.

**제19조** 각급 인민정부와 농업생산경영조직은 농전수리시설건설을 강화하고 농전수리시설 관리제도를 보완하여 물을 절약하고 절수형 농업을 발전시키며, 비농업 건설부문의 관개수원 점용을 법률로 엄격히 통제한다.

조직과 개인이 농전수리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훼손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20조** 국가는 농민과 농업생산경영조직이 도입하는 선진적인 농업기계의 사용을 고무·지원하며 농업기계안전관리를 강화하여 농업기계화수준을 제고한다.

국가는 농민과 농업생산경영조직이 구매하는 선진 농기계에 보조한다.

**제21조** 각급 인민정부는 농업기상사업 발전을 지지하여 기상재해에 대한 감측과 예보수준을 제고한다.

**제22조** 국가는 농산물 품질을 제고하고 농산물품질표준체계와 품질검험 검역시스템을 보완하여 관련 기술규범, 조작규정 및 품질안전위생 표준에 근거, 농산물 생산경영을 함으로서 농산물의 품질안전을 보장한다.

**제23조** 국가는 우량농산물에 대한 인증·표지제도를 법률로 추진한다.

국가는 우량 농산물 생산 발전을 지지하고 지원한다. 현급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당해지역의 상황을 고려, 국가의 관련규정에 근거 우량농산물 생산을 발전시키도록 한다.

국가 표준규정에 부합한 우량농산물은 법률 또는 행정규범에 근거, 관련 표지의 사용을 신청할 수 있다. 산지규정과 생산규범 요구에 부합된 농산물은 관련 법률 또는 행정법규의 규정에 근거, 농산물지리표시 신청을 할 수 있다.

**제24조** 국가는 동식물방역, 검역제도를 실시하며, 동식물방역과 검역체계를 보완하고 동물질병과 식물의 병·충·잡초·쥐 피해에 대한 감측·예고·防治를 강화하며, 중요한 동물질병과 식물 병충해의 신속한 박멸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동물 질병 청정구역을 건설하고 식물보호공정을 실시한다.

**제25조** 농약, 동물약품, 사료, 사료첨가제, 비료, 종자, 농업기계 등 인축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농업생산자재의 생산경영은 관련법률과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등록 또는 허가한다.

각급 인민정부는 농업생산자재의 안전사용제도를 구축하여야 하고 농민과 농업생산경영조직은 국가가 도태·금지시킨 농약, 동물약품, 사료첨가제 등 농업생산자재와 기타 사용을 금지한 제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농업생산자재를 생산하는 자, 판매하는 자는 그 생산·판매하는 상품의 품질에 책임을 져야하며, 저질품으로 고급품을 대체하는 행위, 가짜를 진짜로 둔갑시키는 행위, 불합격한 상품을 합격한 것처럼 위장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또한 국가가 도태·금지시킨 농약, 동물약품, 사료 및 사료첨가제, 농기계 등 농업생산자재의 생산과 판매를 금지한다.

## 제4장 농산물 유통과 가공

**제26조** 농산물 구매·판매는 시장조절 조치를 실시한다. 국가는 국가계획과 밀접한 중요 농산물의 구매·판매에 대해서는 거시적 통제를 행하며, 중앙과 지방의 급별 비축조절제도를 구축하고, 창고비축운수체계를 보완하는 한편, 수급을 보장하고 시장을 안정화시킨다.

**제27조** 국가는 점진적으로 통일·개방·경쟁·질서있는 농산물시장시스

템을 구축하고, 농산물 도매시장 발전계획을 제정한다. 농촌집체 경제조직과 농민전업합작경제조직에 농산물도매시장과 농산물집 무시장을 건설하고 국가는 이에 보조한다.

현급이상 인민정부 공상행정관리부문과 기타 유관부문은 각자의 직무에 따라 농산물 도매시장을 법률로 관리하고 거래질서를 규범 화하며 지방(폐쇄적)보호와 불공정거래를 방지한다.

**제28조** 국가는 여러 형식의 농산물 유통활동을 고무·지지한다. 농민과 농민전업합작경제조직이 국가의 관련규정에 따라 농산물 수매·도매·저장·운송·소매 및 중개하는 활동을 고무하고 지지한다. 공소합작사와 기타 농산물 구관에 종사하는 농업생산경영조직이 시장정보를 제공하고 농산물 유통경로를 개척하며 농산물판매서비스를 하는 것을 지지한다.

현급이상 인민정부는 관련부문이 농산물 운송을 원활히 하고 농산물 유통 원가를 낮추도록 촉구하여야 한다. 관련 행정관리부문은 수속을 간략하게 하고 신선·살아있는 농산물 운송을 편리하게 하여야 하며, 법률과 행정법규에 근거하지 않고 신선·살아있는 농산물 운송도구를 압류할 수 없다.

**제29조** 국가는 농산물 가공업과 식품공업을 발전시켜 농산물 부가가치를 제고하는 것을 지지한다. 현급이상 인민정부는 농산물 가공업과 식품공업 발전계획을 작성하여 농산물 가공기업이 합리적으로 분포하고 규모구조를 갖추도록 유도하며, 농민전업합작경제조직과 향진기업이 농산물 가공과 종합개발에 참여하도록 지지한다.

국가는 농산물 가공제품 품질표준을 구축하고 검측수단을 보완하여, 농산물 가공의 품질안전관리와 감독을 강화하고 식품안전을 보장한다.

**제30조** 국가는 농산물수출입무역발전을 고무한다.

국가는 국제시장을 연구하고 정보와 판매서비스 등을 강화하여 농산물 수출을 촉진한다.

농산물 생산판매질서와 공평무역을 위하여 농산물수입 예비경보제를 실시한다. 어떠한 수입농산물이 국내 관련 농산물의 생산에 중대한 악영향을 이미 초래하였거나 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국가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5장 양식안전

**제31조** 국가는 양식 종합생산능력을 보호·제고 조치를 취하여 양식종합생산수준을 점진적으로 제고하며 양식안전을 보장한다.

국가는 경지보호제도를 구축하고 기본농전에 대해서는 법률로 특별히 보호한다.

**제32조** 국가는 정책, 자금, 기술 등으로 양식주산지를 중점 보조하여 안정적인 상품양곡생산기지를 건설하며 양식 수매저장·가공시설을 개선하는 한편, 양식주산지의 양식 생산·가공수준과 경제효익을 제고한다.

국가는 양식주산지와 소비지가 안정적인 구관관계를 설립하도록 지지한다.

**제33조** 양식시장가격이 너무 낮을 경우, 국무원은 일부 양식품종에 대한 보호가격제도를 실시한다. 보호가격은 농민이익을 보호하고 양식생산을 안정화시킨다는 원칙 하에 결정되어야 한다.

농민이 보호가격제도에 의하여 판매하는 양식에 대해 국가로부터 수매를 위탁받은 기관은 수매를 거절하지 못한다.

현금 이상 인민정부는 재정, 금융 부문과 국가가 위탁한 수매기관을 조직하여, 양식수매자금을 적시에 준비하며, 어떠한 부문이나



단위, 개인도 자금을 유용,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4조** 국가는 양식안전 예비경보제도를 실시하여 양식공급안전을 보장한다. 국무원은 양식안전보장 목표와 양식비축량을 하달하며 수요에 따라 관련부문과 경지, 양식보관상황을 조사한다.

국가는 양식에 대한 중앙·지방 비축조절제도를 실시하여 창고 비축운송시스템을 구축한다. 국가양식비축을 청부맡은 기업은 국가규정에 따라 비축양곡의 수량과 품질을 보장해야한다.

**제35조** 국가는 양식위험관리기금을 설치하여 양식비축, 양식시장의 안정 및 농민이익보호에 사용한다.

**제36조** 국가는 양식의 중요성과 양식절약을 주지시키는 한편, 국민의 음식물 영양구조를 개선시킨다.

## 제6장 농업투입과 지지보호

**제37조** 국가는 농업지지와 보호시스템을 구축하고 보완하여, 재정투입과 세금우대 및 금융지지 등 조치로 자금투입, 과학연구와 기술보급, 교육훈련, 농업생산자재의 공급, 시장정보, 품질표준, 검험검역, 사회화서비스 및 재해구조 등 부문에서 농민과 농업생산경영조직이 농업생산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서 농민수입수준을 높인다.

**제38조** 국가는 점진적으로 농업투입에 대한 총체적인 수준을 높여나간다. 중앙과 현금 이상 지방재정은 매년 농업 총투입에 대한 증가폭을 당해 재정 경상성 수입 증가폭보다 높게 책정하여야 한다.

각급 인민정부가 재정예산에서 농업자금에 안배하는 각 항목의 주요 용도는 다음과 같다.

농업기초시설의 건설강화, 농업구조조정지지와 농업산업화경영의 촉진, 양식종합생산능력의 보호와 국가양식안전의 보장, 동식물 검역 방역체계의 보완과 동물의 질병·식물의 병·충·잡초·취피해의 防治, 농산물 품질표준과 검험검측감독체계·농산물시장과 정보서비스체계 구축, 농업과학연구교육과 농업기술보급 및 농민 훈련에 대한 지지, 농업생태환경보호건설 강화, 빈곤지구개발에 대한 보조, 농민수입수준 보장 등

현금 이상 각급 재정은 종식업, 임업, 목축업, 어업, 농전수리의 농업기본시설건설에 대해 자금을 종합배치하고 협력을 증대시킨다.

국가는 서부개발을 신속하게 하기 위하여 서부지역 농업발전과 생태환경 보호투입을 증대시킨다.

**제39조** 현금이상 인민정부는 매년 재정 예산내 농업에 사용되도록 배분된 자금을 적시에 집행한다. 각급 인민정부는 국가의 각종 농업자금 분배·사용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여 자금의 안전을 보장하고 자금의 사용효율을 제고한다.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농업에 사용되는 재정자금과 신용대부자금을 유용 또는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회계심사기관은 농업에 사용되는 재정자금과 신용대부자금을 대한 심계감독을 법률로 강화한다.

**제40조** 국가는 세수, 가격, 신용대부 등 수단으로 농민과 농업생산경영조직이 농업생산성경영투입과 소형농전수리 등 기초건설 투입을 늘리도록 고무한다.

국가는 농민과 농업생산경영조직이 스스로 다양한 방식으로 농업자금을 모집하는 것을 고무하고 지지한다.

**제41조** 국가는 사회자금이 농업에 투입되는 것을 고무하며, 기업이나 사회단체 또는 개인이 자금을 출연하여 각종 농업건설이나 농업과학

기술 또는 교육기금을 설치하는 것을 고무한다.

**제42조** 각급 인민정부는 기업 사업단위 및 기타 각종 경제조직이 농업정보서비스를 전개할 수 있도록 고무하고 지지하여야 한다.

현급이상 농업행정주관부문 및 기타 관련부문은 농업정보를 수집하고 정리하여 공포하는 제도를 갖추어야 하고, 적시에 농민과 농업생산경영조직에게 시장정보 등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3조** 국가는 농업용 공업발전을 고무하고 지원한다.

국가는 세금, 대출 등 방법으로 농업생산자재의 생산과 무역을 고무하고 지원하여, 농업생산이 안정적으로 증대되도록 물질적 보장을 기한다.

국가는 거시적 통제로 화학비료, 농약, 농업용비닐, 농업기계 및 농업용 경유 등 농업생산자재와 농산품간의 합리적인 대비가격을 유지하도록 한다.

**제44조** 국가는 공소합작사, 농촌집체경제조직, 농민전업합작경제조직, 기타 조직과 개인이 다양한 형식으로 농업생산 전·중·후의 사회화서비스사업을 발전시키도록 고무한다.

현급이상 인민정부와 관련부문은 농업사회화 서비스사업에 대하여 지지하여야 한다.

2개 이상 지역에서 농업사회화 서비스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농업, 공상관리, 교통운송, 공안 등 관련부문이 지지하여야 한다.

**제45조** 국가는 건전한 농촌금융시스템을 구축하고, 농촌신용제도건설을 강화하며, 농촌금융감독관리를 강화한다.

관련 금융기구는 신용대출을 늘리며 농촌금융서비스를 개선하여, 농민과 농업생산경영조직의 농업생산경영활동에 신용대출로 지지한다.

농촌신용협작사는 마땅히 농업, 농민과 농촌경제발전을 위해 봉사한다는 원칙을 견지하여 당해 지역 농민의 생산경영활동에 우선적으로 신용대출한다.

국가는 이차보전 방식으로 금융기구의 농민과 농업생산경영조직의 농업생산경영활동에 제공하는 신용대출 서비스를 고무한다.

**제46조** 국가는 농업보험제도를 구축하고 보완한다.

국가는 지속적으로 정책성 농업보험제도를 구축 보완한다. 농민과 농업생산경영조직이 농업생산경영활동서비스의 상호보완 협력하는 보험조직을 고무하고 지원하며, 상업성 보험회사가 농업보험 업무를 실시하는 것을 고무한다.

농업보험 실시는 自願에 의한다. 어떠한 조직과 개인도 농민과 농업생산경영조직에 강제적으로 농업보험에 가입하도록 할 수 없다.

**제47조** 각급 인민정부는 농업이 자연재해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이도록 조치를 취하는 한편, 화재방지·재해방어 및 재해구조사업을 잘 하여 재해를 입은 자의 생산회복을 돕고 생산자구활동을 하도록 하며, 사회부조활동을 전개한다. 기본생활보장이 아니되는 재해민에 대하여는 구제와 보조를 실시한다.

## 제7장 농업과학기술과 농업교육

**제48조** 국무원과 각급 인민정부는 농업과학기술, 농업교육 발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농업과학기술과 교육사업을 발전시킨다.

현급이상 인민정부는 국가의 관련규정에 따라 농업과학기술 예산과 농업교육 예산을 점차 늘려야 한다.

국가는 기업 등 사회역량의 농업과학기술에 대한 투입을 고무하고 유도하며, 농민 농업생산경영조직, 기업 등의 법률에 의한 농업

과학기술과 교육사업 추진을 고무한다.

**제49조** 국가는 식물 신품종, 농산물 지리표시 등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며, 농업과학연구, 교육기관이 농업과학기술 기초연구와 응용연구를 강화하고, 농업과학기술지식을 전파·보급하며, 과학기술성과를 빠르게 산업에 응용시키고, 농업과학기술진보를 촉진하는 것을 고무하고 인도한다.

국무원 관련부문은 농업 중요부문의 과학기술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주도한다. 국가는 국제농업과학기술, 교육협력 및 교류를 촉진하고, 국외 선진기술의 도입을 고무한다.

**제50조** 국가는 농업기술보급사업을 지원하고, 정부지원과 시장인도의 상호결합, 유상 무상 서비스의 상호결합, 국가농업기술보급기구와 사회역량이 상호결합한 농업기술보급 서비스 체계를 구축, 선진 농업기술을 농업생산에 조속히 응용할 수 있도록 촉진한다.

**제51조** 국가가 설립한 농업기술보급기구는 농업기술시험시범기지에 위탁, 공공이 필요로 하는 핵심기술의 보급과 시범사업을 하도록 하여, 농민과 농업생산경영조직에 공익성 농업기술서비스를 제공토록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농업생산 발전수요에 근거, 농업기술보급팀을 안정적으로 강화하며, 농업기술보급기구의 사업경비를 보장하여야 한다.

각급 인민정부는 국가의 규정에 따라 농업기술보급사업에 종사하는 전문 과학기술인력의 사업추진조건, 임금 및 생활조건을 보장하고 개선함으로써 이들의 농업서비스를 고무한다.

**제52조** 농업과학연구단위, 관련 학교, 농업기술보급기구 및 과학기술인은 농민과 농업생산경영조직의 수요에 따라 무상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또한 기술임차, 기술서비스, 기술계약, 기술주식화 납입 등 방식으로 유상으로 서비스하여 합법적인 수익을 취득할 수 있다. 농업과학연구단위, 관련 학교, 농업기술보급기구 및 과학기술인은 서비스 수준을 제고하여야 하며, 서비스 품질을 보장하여야 한다.

농업과학연구단위, 관련 학교, 농업기술보급기구가 주관한 농업 서비스기업에 대하여는 국가가 세금, 신용대출 등 부문에서 우대한다.

국가는 농민, 농민전업합작경제조직, 공소합작사, 기업 등이 농업기술보급사업에 참여하도록 고무한다.

**제53조** 국가는 농업전문기술인력에 대한 계속교육제도를 구축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농업행정주관부문은 교육, 인사 등 관련부문과 함께 농업전문기술교육계획을 작성하며, 아울러 이를 실시한다.

**제54조** 국가는 농촌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의무교육을 실시하며 의무교육 비용을 보장한다. 국가는 농촌에서 주관한 일반 초·중학교 교직원 임금을 현급 인민정부가 국가의 통일된 규정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며, 교실과 숙소 등 교육시설의 건축과 보수비용은 현급 인민정부가 국가의 통일된 규정에 따라 배정토록 한다.

**제55조** 국가는 농업직업교육을 발전시킨다. 국무원 관련부문은 국가직업 자격증서제도의 통일규정에 근거, 농업사업의 직업분류, 직업기능 감정사무를 실시하며, 농업사업의 자격증서를 관리한다.

**제56조** 국가는 농민이 선진 농업기술을 취하도록 고무하고, 농민이 주관한 각종 과학기술조직을 지지하며, 농업실용기술훈련·농민녹색증서훈련과 기타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한편, 농민의 문화기술수준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한다.

## 제8장 농업자원과 농업환경보호

**제57조** 농업과 농촌경제의 발전에는 토지·물·삼림·초원·야생동식물 등 자연자원의 합리적인 이용과 보호, 물에너지·메탄가스·태양에너지·바람에너지 등 재생 가능한 청결 에너지의 합리적인 개발과 이용 및 생태농업의 발전과 생태환경의 보호와 개선이 꼭 필요하다.

현급이상 인민정부는 농업자원구역계획 또는 농업자원의 합리적인 이용과 보호를 위한 구역계획을 수립하고, 농업자원감측제도를 수립한다.

**제58조** 농민과 농업생산경영조직은 경지를 보호하고 화학비료·농약·농업용비닐을 합리적으로 사용하며 유기비료의 사용을 늘리고 선진 기술을 채택하여 지력을 보호 증대시키며, 농지의 오염·파괴·손실을 방지토록 하여야 한다.

현급이상 인민정부 농업행정주관부문은 농민과 농업생산경영조직이 경지의 품질향상을 피하도록 지지하고 경지품질에 대한 정기적인 감측을 실시한다.

**제59조** 각급 인민정부는 소유역종합치수관리를 강화하여 수토유실을 예방하고 관리한다. 수토유실을 야기할 수 있는 생산건설활동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은 반드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생산건설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수토유실은 복구할 책임이 있다.

각급 인민정부는 토지 사막화의 예방, 사막화된 토지의 관리를 추진한다. 국무원은 사막화된 토지가 소재한 현급이상 지방 인민정부와 합동으로 법률에 규정한 防沙治沙계획에 의거 실시한다.

**제60조** 국가는 전국민 의무식수제도를 실시한다. 각급 인민정부는 균중 식수조립을 추진하고, 임지와 임목을 보호하며, 산림화재를 예방하고, 산림병해충을 예방치료하며 임목의 남벌·도벌을 통제하여 산림피복률을 제고시킨다.

국가는 천연림보호구역에서 벌채를 금하거나 제한하는 제도를 실시하여 임목의 조성과 보호를 강화한다.

**제61조** 관련 지방인민정부는 초원의 보호·건설 및 관리를 강화하고, 농(목)민과 농(목)업생산경영조직을 지도·조직하여 인공초지·사료용 조사료기지와 개량천연초원을 건설하고, 목초량으로 가축규모를 정하여 사육규모를 통제하며, 구역별 계획 輪牧, 休牧 및 禁牧하는 제도를 실시하는 한편, 초원식피를 보호하고 초원의 퇴화 사막화 및 염적화를 방지한다.

**제62조** 임목과 초원을 훼손하여 개간하거나 화전개간 및 국가가 개간을 금지한 경사지를 개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미 개간된 곳은 점진적으로 초원 또는 임목지로 전환시킨다.

호수주변의 농지조성과 국가가 개간을 금지한 습지 개간을 금지한다. 이미 개간된 곳은 점진적으로 호소, 습지로 전환시킨다.

국무원이 비준한 자연환경지역 범위 내의 농민에 대하여는 국가의 규정에 근거, 보조한다.

**제63조** 각급 인민정부는 포획한도금액제도와 禁漁, 休漁제도를 실시한다. 어업자원을 늘리며 어업수역 생태환경을 보호한다.

국가는 물고기 포획에 종사하는 농(어)민과 농(어)업생산경영조직이 수산양식업 또는 기타 직업에 종사하는 것을 인도 또는 지도한다. 당해 지역 인민정부의 통일 규정에 따라 전업한 농(어)민에 대하여는 국가의 규정에 따라 보조한다.



**제64조** 국가는 농업생산과 관련있는 생물종자 자원보호제도를 구축하여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고 희귀한 생물자원과 그 원산지를 중점 보호한다. 해외에서 도입된 생물종자자원은 법률에 의거 등록 또는 심사비준을 받아야 하며, 상응하는 안전통제조치를 병행한다.

농업유전자변형생물의 연구, 시험, 생산, 가공, 경영 및 기타 응용은 국가의 규정에 따라 각종 안전통제조치를 엄격하게 실행하여야 한다.

**제65조** 각급 농업행정주관부문은 농민과 농업생산경영조직이 고효율·저독성 농약·수의약품을 사용하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동식물의 병·충·잡초·쥐 피해를 예방치유한다.

농작물 수확 후의 줄기 및 기타 잉여물은 합리적으로 이용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일으키거나 생태환경이 파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가축을 대규모로 사육하는 단위와 개인은 분변, 폐수 및 기타 폐기물에 대하여 해가 없도록 처리하거나 종합 이용토록 하고, 수산양식업에 종사하는 단위나 개인은 합리적으로 급이·시비 및 약물을 사용하며 환경오염을 일으키거나 생태환경이 파괴되지 않도록 한다.

**제66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관련 단위나 개인이 폐수, 폐기가스, 고체폐기물의 농업생태환경에 대한 오염을 처리 또는 예방처리토록 촉구한다. 폐수, 폐기가스 및 고체폐기물로 인하여 야기된 농업생태환경오염 사고에 대하여는 환경보호 행정관리주관부문 또는 농업행정관리주관부문이 법률에 근거하여 조사처리하며, 농민과 농업생산경영조직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관련 책임자가 법률로 배상한다.

## 제9장 농민 권익보호

**제67조** 어떠한 기관이나 단위도 농민 또는 농업생산경영조직에 행정이나 사업성 비용을 수취하고자 할 때에는 법률·법규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비용을 수취하는 항목·범위와 표준은 공고되어야 한다. 법률·법규·규장에 의하지 않는 비용각출에 대하여는 농민 또는 농업생산경영조직이 거절할 권리를 갖는다.

어떠한 기관이나 단위도 농민 또는 농업생산경영조직에 벌금을 부과하거나 처벌을 하고자 할 때에는 법률·법규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법률·법규·규장에 의하지 않는 벌금부과에 대하여는 농민 또는 농업생산경영조직이 거절할 권리를 갖는다.

어떠한 기관이나 단위도 어떤 방식으로든 농민 또는 농업생산경영조직에 할당할 수 없다. 법률·법규 및 기타 규정을 제외한, 기관·단위가 농민 또는 농업생산경영조직에 인력, 재물, 물리력을 제공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할당에 속한다. 농민 또는 농업생산경영조직은 할당을 거절할 권리를 갖는다.

**제68조** 각급 인민정부와 그 관련부문 및 소속단위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농민 또는 농업생산경영조직에 자금을 모으도록 할 수 없다.

법률·법규에 의하지 않거나 국무원의 비준을 거치지 아니한 채, 기관 혹은 단위는 농촌에서 실천하여야 할 목표·승급·검수 활동을 시달할 수 없다.

**제69조** 농민 또는 농업생산경영조직은 법률·행정법규의 규정이 인정한 납세의무를 진다. 세무기관과 대행을 맡는 단위는 법률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하며 불법으로 세금을 할당하거나 기타 위법한 방법으로 세금을 징수하지 못한다.

**제70조** 농촌의무교육은 국무원이 수취를 규정한 비용 외, 농민과 학생들에게 기타 비용을 수취할 수 없다. 기관 혹은 단위가 농촌 초·중학교를 경유하여 농민에게 비용을 납부토록 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71조** 국가는 법률에 따라 농민집체소유의 토지를 수용함에 있어 농민과 농촌집체경제조직의 합법적인 권익이 보호되어야 하며, 법률로 농민과 농촌집체경제조직에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을 실시한다. 어떠한 단위와 개인도 토지보상비용을 유용, 보류시킬 수 없다.

**제72조** 각급 인민정부, 농촌집체경제조직 또는 촌민위원회는 농업과 농촌 경제구조조정·농업산업화경영 및 토지승포경영권 양도 등의 과정에서 농민의 토지승포경영권을 침해할 수 없으며, 농민의 자주적인 생산경영활동을 간섭할 수 없고, 농민에게 특정 생산자재의 구입 또는 지정된 곳에서의 구입판매를 강요할 수 없다.

**제73조** 농촌집체경제조직 또는 촌민위원회는 생산의 발전 또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그 구성원들로부터 자금 또는 노동을 모으고자 할 때에는 그 성원(촌민)회의 또는 대표회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거친 이후에 실시할 수 있다.

농촌집체경제조직 또는 촌민위원회가 상기의 자금 또는 노동을 모으는데에는 성급이상 인민정부가 규정한 상한표준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자금으로 노무를 대신토록 강제하지 못한다.

농촌집체경제조직 또는 촌민위원회가 농민이익에 관련된 중요사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농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재무상황을 공포하며, 농민으로부터 감독을 받는다.

**제74조** 어떠한 단위나 개인이 농민 또는 농업생산경영조직에 생산·기술·정보·문화·보험 등 유상서비스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自願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농민 또는 농업생산경영조직에

게 서비스를 받도록 강제하지 못한다.

**제75조** 농산물 수매단위가 농산물을 수매할 때, 등급을 내리거나 가격을 내리지 못하며, 지불 시 여타 비용을 공제하지 못한다. 법률·행정법규가 규정한 압류대리·징세대리는 관련 법령에 따른다.

농산물 수매단위와 농산물 판매자 간 농산물 품질등급으로 쟁의가 발생하는 경우, 법률적 기능을 갖는 농산물품질검사기구에 위탁하여 검사 받을 수 있다.

**제76조** 농산물 생산자재 사용자가 생산자재의 품질문제로 손실을 입은 경우, 당해 생산자재를 판매한 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배상액에는 자재구입비, 관련 비용 및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을 포함한다.

**제77조** 농민 또는 농업생산경영조직은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급 인민정부 및 그 관련 유관부문에 상황을 설명하고 합법적으로 요구하는 권리를 제출한다. 인민정부 및 그 관련 유관부문은 농민 또는 농업생산경영조직이 제출한 합리적 요구에 대하여는 국가 규정에 따라 적시에 답변하여야 한다.

**제78조** 법률규정에 위배되고 농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은 농민 또는 농업생산경영조직이 법률에 의하여 행정심의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관련 인민정부와 그 관련 유관부문 혹은 인민법원은 법률로 수리하여야 한다.

인민법원과 사법행정주관기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농민에게 법률원조를 실시한다.

## 제10장 농촌경제발전

**제79조** 국가는 도시와 농촌이 협조하여 발전한다는 방침을 견지, 농촌 제 2, 제3산업을 지원하며, 농촌경제구조를 조정하고 우량화시켜 농민 수입을 늘리는 한편, 농촌경제를 전면적으로 발전시켜 도·농간 격차를 점진적으로 줄인다.

**제80조** 각급 인민정부는 향진기업을 발전시키고, 농업의 발전과 잉여농업 노동력의 이전을 지지한다.

국가는 향진기업발전 지지조치를 보완, 향진기업 우량화를 유도하고 기술을 갱신하며 수준을 향상시킨다.

**제81조** 현급이상 인민정부는 당지의 경제발전수준과 구역우세 및 자원조건에 근거, 합리적인 분포·과학적인 계획·토지절약 원칙에 따라, 중점이 있는 지역을 선정, 농촌 소도시 건설을 추진한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시장시스템 운용을 중시하여 관련 정책을 보완, 농민과 사회자금이 소도시 개발건설에 투입되도록 유도하고 제2, 제3산업을 발전시키며 향진기업의 상대적인 집중 발전을 유도한다.

**제82조** 국가는 농촌의 잉여노동력이 도농간, 지역간 질서있게 이동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소도시에 진입하여 취업한 농촌노동력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하며, 불합리한 제재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기 설치한 제재는 취소한다.

**제83조** 국가는 농촌사회구제제도를 계속 보완하여 농촌 5保戶·빈곤질병 농민·빈곤노인농민과 기타 노동력을 상실한 농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한다.

**제84조** 국가는 농민의 농촌합작의료와 기타 의료보장형식의 공고화와 발전을 지지하며 농민건강수준을 제고한다.

**제85조** 국가는 빈곤지구의 경제발전조건 개선을 지원하고 경제개발 추진을 돕는다. 성급 인민정부는 국가의 빈곤지구지원에 대한 총체적인 목표와 요구에 근거하여 빈곤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한다.

각급 인민정부는 개발식 빈곤지원방침을 견지, 빈곤지구의 농민과 농업생산경영조직을 조직하여 빈곤지원자금이 합리적으로 사용되도록 하고, 자신의 역량에 따라 빈곤 낙후 상황을 탈피토록 하며, 빈곤지구 농민이 경제구조와 당해지역의 資源을 조정하도록 인도한다.

빈곤지원개발은 자원보호·생태건설이 상호 결합되도록 하여야 하며, 빈곤지구의 경제·사회의 협조발전과 전면적인 진보를 촉진하여야 한다.

**제86조** 중앙과 성급 재정은 빈곤지원개발투입을 연도별 재정예산에 포함시켜야 하며, 매년 증액하여 빈곤지구에 대한 재정전이지불과 건설자금투입이 늘도록 한다.

국가는 금융기구와 기타 사업단위 및 개인이 자금을 빈곤지구에 투입하여 개발 건설하도록 고무하고 지원한다.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빈곤지원자금을 유치, 남용할 수 없다. 심계기관은 빈곤지원자금의 심계감독을 강화하여야 한다.

## 제11장 법률집행감독

**제87조** 현급이상 인민정부는 사회주의시장경제발전이 요구하는 농업행정

관리체제에 점차 적응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농업행정주관부문 및 관련 행정주관부문은 계획·지도·관리·협조·감독·복무책임을 강화하고, 법에 의하여 집행하며 공정하게 집행한다.

현급이상 지방인민정부와 농업행정주관부문은 당해 책임 범위내에서 건전한 행정집행대오를 갖추고 종합적으로 법률을 집행하며 법률집행효율과 수준을 제고한다.

**제88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농업행정주관부문 및 법 집행인은 법률집행을 감독할 때 다음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갖는다.

- (1) 피 검사 단위 또는 개인에게 상황을 설명하게 하거나 관련된 문건, 증명,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 (2) 피 검사 단위 또는 개인에게 본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중지토록 명하거나 법정의무를 이행토록 명할 수 있음.

농업행정 법 집행인이 감독검사를 수행할 때에는 피 검사 단위 또는 개인에게 행정 법 집행 증명을 보여야 하며, 법률집행 순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관련 단위와 개인은 농업행정 법 집행인을 동행하여 법에 의한 집행직무를 행하여야 하며 거절 또는 방해할 수 없다.

**제89조** 농업행정주관부문과 농업생산·경영단위는 기구, 인력, 재무가 철저히 분리되어야 한다. 농업행정주관부문 및 사무 종사자는 농업생산경영활동에 참가 또는 종사할 수 없다.

## 제12장 법률책임

**제90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배하여, 농민과 농업생산경영조직의 토지승포경영권 등 재산권 또는 기타 합법 권익을 침해한 자는 당해 침해를 정지하며, 원상회복한다. 손실·손해를 조성한 자는 법률에 의거

배상책임을 진다.

국가 공무원이 직무를 이용하거나 또는 기타 명의를 이용하여 농민과 농업생산경영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 자는 손실을 배상하며, 그 소재 단위 또는 상급 주관기관이 행정처분한다.

**제91조** 이 법 제19조, 제25조, 제62조, 제71조의 규정을 위배한 자는 관련 법률 또는 행정법규의 규정에 의거 처벌한다.

**제92조** 다음 행위의 하나에 대하여는 상급 주관기관이 기한 내에 유치·남용한 자금을 반환하도록 조치하고, 불법소득은 몰수하며, 상급 주관기관 또는 소재단위는 직접 책임 있는 자와 기타 직접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행정처분한다. 범죄가 구성되면 법률로 형사처벌한다.

(1) 이 법 제33조제3관 규정을 위배하여 양식수매자금을 유치, 남용한자

(2) 이 법 제39조제2관 규정을 위배하여 농업재정자금과 신용대출금을 유치, 남용한자

(3) 이 법 제86조제3관 규정을 위배하여 빈곤지원자금을 유치, 남용한자

**제93조** 이 법 제67조 규정을 위배하여 농민 또는 농업생산경영조직에 법을 위반한 수금, 벌금부과, 할당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상급 주관기관이 이를 제지하고 공고하여야 함. 이미 수취한 금전이나 이미 사용한 인력·물자에 대하여는 상급 주관기관이 기한을 정하여 금전 또는 그 대가를 변상토록 하고, 상급 주관기관 또는 소재하는 단위는 직접 책임이 있는 자와 기타 직접 책임이 있는 자를 행정처분한다. 범죄가 구성되면 형사처벌한다.

**제94조** 다음 행위의 하나에 대하여는 상급 주관기관이 그 위법행위를 정지시키고 책임 있는 자와 기타 직접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행



정처분하며, 불법으로 모금한 자금·세금·비용을 반환토록 한다.

- (1) 이 법 제68조 규정을 위배하여 불법으로 농촌에서 자금모집·목표시달·승급·검수활동을 한 자
- (2) 이 법 제69조 규정을 위배하여 위법하게 세금을 징수한 자
- (3) 이 법 제70조 규정을 위배하여 농촌 초·중학교를 통하여 농민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비용을 요구한 자

**제95조** 이 법 제73조제2관 규정을 위배하여 농민에게 노무 대신 현금을 요구한 자는 향(진) 인민정부가 시정을 명하고 불법으로 수취한 자금을 반환토록 한다.

**제96조** 이 법 제74조 규정을 위배하여 농민 또는 농업생산경영조직에 유사서비스를 요구하는 자는 관련 인민정부가 시정을 명하고 불법으로 수취한 자금을 반환토록 한다. 상황이 심한 경우, 직접 책임이 있는 자와 기타 직접 책임이 있는 자를 행정처분한다. 농민 또는 농업생산경영조직에 끼친 손실에 대하여는 법률로 배상한다.

**제97조** 현금 이상 인민정부 농업행정주관부문 종사자가 본 법규를 위반하여 농업생산 경영활동에 참여 또는 종사한 경우, 법률로 행정처분한다. 범죄가 구성되면 형사처벌한다.

## 제13장 부칙

**제98조** 이 법과 관계있는 농민 규정은 국유농장, 목장, 林場, 어장 등 기업사업단위가 승포경영을 실시하는 직원에 대하여 적용된다.

**제99조** 이 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자료: [http : //www.koreaemb.org.cn](http://www.koreaemb.org.cn)(주중한국대사관홈페이지)에서

## 대만, 쌀 수출확대 가이드라인 결정

2002년도 대만의 쌀 생산량은 약 130만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어 쌀 비축량은 40만톤을 초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예상되는 과다비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만 농업위원회는 외국으로의 식량원조에 의한 쌀 수출확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2002년도 대만에서는 1기작 도작에 한발이 발생하였지만, 연간 쌀 수확량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기작 쌀이 양호한 기상조건에 의해 식부면적이 확대되어 1기작의 식부면적 감소를 만회하였기 때문이다. 2002년도 쌀 생산량은 전년대비 2.4% 증가한 130만톤(정곡기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기에 추가하여 대만 정부의 미가보증제도에 의해 향후도 쌀 증산은 계속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 같은 상황아래서 대만 농업위원회는 쌀 비축이 40만톤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만 농업위원회는 쌀 생산조정을 실시하는 동시에 수출확대 방침을 세워두고 있다.

한편, 지난 20년간 대만은 소득증가와 식생활 변화에 의해 쌀 소비량은 계속 감소해 왔다. 단지 2001년은 국내경제의 침체로 인해 소비량이 약간 증가하고 있다. 때문에 2002년과 2003년의 쌀 소비량은 125만톤 전후 수준으로 안정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만은 2002년 1월 WTO 가입을 계기로 쌀 수입금지조치를 철폐하였다. WTO 가입을 조건으로 쌀 관세화를 1년간 유예하는 대신에 국내 소비량의 8%에 상당하는 14만 4,720톤(현미, 정곡환산으로 12만 7,350톤)의 쌀을 최소시장접근(MMA)으로 수입을 의무화하였다. 수입쌀 중 65%는 정부 수입이고, 나머지 35%는 민간기업에 할당하였다. 그러나 2003년 1월부터는 쌀 수입을 관세화를 함으로써 상기 MMA 쌀은 관세할당물량으로 전환되어 저율 관세로 수입하게 된다.

2002년 9월 대만 농업위원회는 쌀 수출확대를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인도적 식량원조를 위한 가이드라인’(Guidelines for Humanitarian Food Aid)을 발표하였다. 이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대만은 우선 10만톤의 쌀을 식량원조로서 수출할 계획이다.

식량원조에 의한 수출 쌀은 모두 수입국에 대한 증여로서 취급되어 수출비용과 취급수수료는 원조를 받는 수입국이 부담하게 된다. 때문에 이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지는 국가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업계는 2002년도 쌀 수출량은 9만 3,000톤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자료: [http : //www.maff.go.jp/kaiai/2002/20021201taiwan09b.htm](http://www.maff.go.jp/kaiai/2002/20021201taiwan09b.htm)에서  
(김태곤 taegon@krei.re.kr 02-3299-4241 농정연구센터)

## 호주, 한발 영향으로 곡물생산 대폭 감소

호주 농업자원경제국(ABARE)은 지난해 10월 곡물보고서 한발특별호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는 분기별로 기상조건 등을 감안, 곡물의 수확상황을 예측한 것이지만, 이번에는 2002년 들어 뉴사우스웨일즈(NSW)주를 중심으로 발생하여, 확대되고 있는 한발의 영향이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호로 발간되었다.

내용은 지난해 9월에 발표된 동계 곡물(대맥, 소맥, 카노라, 루핀 등 4품목)의 수확예상량을 대폭 수정하고 있다. 9월 예측에서는 이들 4품목의 수확량은 합계 약 2,000만톤이었으나 이번 예측에서는 1,480만톤으로 26%나 하향 수정하고 있다.

요인은 호주의 주요곡물 생산지대인 NSW주 북부지역 및 빅토리아주 북부지역에서 4월부터 9월의 강우량이 평년 강우량의 40%에서 60% 수준으로 줄어든 것에 의해 동계 곡물의 식부면적이 대폭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ABARE의 한 전문가는 “작년은 3,400만톤의 기록적 동계 곡물을 수확하였지만 금년은 운이 좋더라도 1,500만톤 정도가 고작이다”고 비관적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에서 곡물의 주요 생산주의 수확량은 NSW주 220만톤(전년 대비 - 76%), 빅토리아주 150만톤(동 - 68%), 남호주주 410만톤(동 - 50%), 서호주주 630만톤(동 - 42%) 등으로 전년에 비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 결과로 현시점에서 한발 피해로 인해 호주의 2002/03년도의 경제성장률이 0.7%(약 54억 호주달러) 인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호주식육가축생산자사업단(MLA)에 의하면, 육우생산자는 가축 사료용 곡물을 작년은 대략 1톤당 200호주달러로 확보할 수 있었지만, 지난 10월 평균으로 350호주달러로 급상승하였다. 특히 대맥과 수수의 가격인상이 심각하다. 가축비육산업부문에서는 사료가격의 급상승으로 소규모 경영은 육우 도입을 중지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한다.

또, 빅토리아주주의 낙농주산지인 골반지방에서는 풍부한 관개용수를 이용하여 목초지를 유지 관리하였지만, 한발 영향으로 관개용수의 사용제한 등으로 목초의 생육이 저해되어 외부에서 건초 등 사료구입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 지방의 낙농가는 젖소 도태로 대처하고 있지만 우유생산량이 30%나 감소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도 시사되고 있다. 빅토리아주의 한 협동조합의 시산에 의하면, 이 지역의 낙농가 1호당 평균 약 14만 호주달러의 소득 감소를 예상되고 있다.

더욱이 호주 포크 리미티드(APL)에 의하면 각 주정부가 한발로 인한 피해에 대해 주로 육우나 양을 대상으로 긴급지원조치를 강구하고 있지만, 육돈은 보조대상이 제외하고 있다. APL은 호주의 양돈산업은 경영비용의 7할 정도를 사료비가 차지하고 있으며, 한발로 인한 사료가격 폭등은 상당히 영향이 크기 때문에 농업부 장관에게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호주는 금년도 여름을 맞이하여 강우량 감소와 기온 상승 등으로 계속 건조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한발이 오랫동안 계속되면 호주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자료: <http://lin.lin.go.jp/alic/week/2002/nov/554sd.htm> 에서  
(김태곤 taegon@krei.re.kr 02-3299-4241 농정연구센터)

## 미국, 호주와 FTA 체결시 농산물 예외처리

미국 무역대표부(USTR) 줄릭 무역대표는 지난해 11월 14일 호주 수도 캔버라에서 하워드 총리, 베일 무역장관과 회담을 갖고, 미국과 호주간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정부간 협상을 빠르면 2003년 초에 시작하기로 합의하였다.

세계 최대의 농산물 수출국인 미국은 이미 1994년에 본격적인 FTA로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캐나다·멕시코와 3개국간에 체결한 바 있으며, WTO 농업협상에서 수출보조금이 없는 농산물수출국 18개국으로 구성되는 케언즈 그룹의 의장국가인 호주와의 FTA 협상에서는 농업문제가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호주간 FTA 체결을 위한 최대 과제인 양국간 농산물무역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 정리한다.

### 1. 줄릭 무역대표, 농산물무역 자유화를 강조

양국은 농업, 광공업, 서비스, 투자, 지적소유권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FTA를 지향할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농산물에서 국제경쟁력이 있는 호주가 협상 상대국인 만큼 미국에 있어 중요한 품목인 쇠고기, 설탕, 유제품 등의 농산물이 포함될 것은 확실하며, 미국 농업에는 위협이 될 수 있다. 양국 정부간 협상은 2003년 2월 중순에 시작, 2004년 중에 체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WTO 비공식 각료회의에 출석하기 위해 호주를 방문했던 USTR 줄릭 무역대표는 11월 14일 하워드 총리와 회담을 가진 후 미국 의회로 보낸 서한에서 “호주와의 FTA를 추진하는 것은 양국간 물품 및 서비스교역을 한층 촉진시키고, 고용창출효과도 있어 미국의 이익증대로 이어질 뿐 아니라, 무역면에서의 연대강화와 미국 상품수출에 대한 장벽철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협상에서는 농산물교역문제의 진전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며, 미국의 농산물 수출촉진을 위해 노력할 생각이다”라고 말해, 농업문제에 중점을 둘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줄릭 무역대표는 “호주야말로 WTO 농업협상에서 미국제안의 최대 지지자이며, 양국간 FTA 협상은 WTO 농업협상에서 상호 협력관계가 한층 긴밀해 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향후 WTO 협상을 통해 식량원조의 권리와 농산물 판매시장의 개발, 수출신용제도를 유지하면서 농산물의 수출보조금을 철폐하기 위해 호주와 연대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미국 정부는 의회와 국내 농업단체와의 협의를 해나가는 한편, 처리에 민감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 대해 그 실태를 조사한 후 보고하도록 요청하였다. 수입처리에 신중성이 요구되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관세철폐 실시까지의 조정기간을 설정할 예정이다. 동시에 미국은 호주에 대해 특히 국영무역기업의 개혁을 요구하고, 밀, 보리, 쌀 그리고 설탕에 대한 국영수출독점의 폐지를 요구할 계획이다. 또한 미국은 호주의 국영무역기업의 특권을 배제하기 위해 호주 정부의 구체적인 관여에 대해서도 분명히 할 계획이다.

또한, 검역위생조치(SPS)에 대해 미국은 호주 당국과의 연계를 강화하면서 불공정한 호주의 SPS에 의한 제한 철폐를 요구해 나갈 것이다. 현재 호주는 미국이 수출하고 있는 닭고기, 돼지고기, 일부 과일과 채소를 대상으로 엄격한 검역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호주는 대미국 농산물수출을 한층 확대시킬 것을 목표로 이전부터 미국과의 FTA 체결을 희망하고 있었다. 호주는 미국의 쇠고기, 유제품, 설탕, 감귤류, 체리, 토마토, 벌꿀 등의 품목에 관한 관세할당 등의 조치를 줄기차게 비판해 왔으나 이렇다 할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아 오랜 불만이 쌓여 있다.

## 2. 농업보호를 위한 예외 규정이 많은 농산물

미국은 지금까지 자유무역추진의 입장에서 GATT·WTO 체제에서 농산물에 대해서는 세계 최대의 수출국으로서 각국에 시장개방을 요구하여 수출기회 확보에 노력해 왔다. 또한, FTA에 대해서는 1985년에 이스라엘과 체결한 것을 시작으로, 1989년에는 캐나다와, 그리고 1994년에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개국에 의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체결하고, 경제적 차가 큰 개도국 멕시코와의 본격적인 FTA에 의해 무역량을 급속히 확대시켜 오늘날에 이르렀다.

그러나, 농산물에 대해서는 예외 품목으로 취급하여 FTA가 지향하는 관세철폐에 의한 완전자유화의 어려움을 말해 주고 있다. 예를 들면, NAFTA에서 미국과 캐나다간에는 농산물 관세철폐에 대해 미국측에서는 1,199 품목 중 유제품, 땅콩, 설탕, 목화 등 58 품목, 캐나다측에서는 1,015 품목 중 유제품, 가금육, 계란 등 35 품목이 관세철폐 예외품목으로 설정하였다. 기타 대부분의 농산물 관세는 1998년까지 철폐되었으나, 양국 모두 처리에 신중을 요하는 민감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철폐를 거부하고 있다. 또한, 미국·멕시코간에는 협정발효후, 즉시, 5년후, 10년후, 15년후 등 단계로 나누어 농산물 관세는 원칙적으로 전품목 철폐하도록 되어있다.

단지 NAFTA에서는 농산물 수입이 일정 수준에 달하면 자동적으로 발동되는 특별세이프가드(SSG) 조치를 설정하여, 미국은 양파, 토마토, 가지,



칠레고추, 스쿼시, 수박 등의 수입에, 멕시코는 돼지고기, 사과, 감자제품 등의 수입에 이를 적용하여 자국 농산물을 확실히 보호하고 있다.

호주의 주요 수출농산물인 유제품은 미국에서 관세할당품목으로 설정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UR 협정에서 미국의 치즈수입물량은 14만톤으로 설정되었는데, 호주부터의 수입쿼터는 7,000톤으로 5%에 불과하다(쿼터내 세율은 10~16%, 쿼터외 세율은 60~65%). 또 설탕의 MMA는 113만 9,000톤이지만, 2000~01년 호주로부터의 수입량은 8만 7,408톤에 지나지 않는다. 쇠고기도 관세할당제도가 적용되고 있고, 양고기는 세이프가드조치로 보호되고 있다.

### 3. FTA 협상개시에 대한 미국 농업단체 반응

미국의 부시 정권은 호주와의 FTA 협상개시 합의를 발표하였는데, 이 발표에 대한 미국 농업단체의 반응은 다양하다.

미국 최대의 농업단체로 대규모 경영주를 주요 회원으로 하는 ‘미국농업인연합회’(AFBF)는 아직까지도 호주와의 FTA 협의 개시에는 반대하고 있고, 지난 9월의 USTR 줄릭 무역대표와 베네만 농업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도 동조하는 다른 농업단체와 함께 반대의견을 전해 왔다. 그런데 11월 6일 USTR과 농업단체의 협상 중에서 USTR의 존슨 수석교섭관은 호주측의 SPS 개선 등에 대해 밝은 전망을 설명, 호주와의 FTA 체결에 대한 이해를 구한 결과 태도가 크게 바뀌었다.

미국농업인연합회와 기타 9단체(미국사료협회, 미국대두협회, 전국수수생산자단체, 전국돈육생산자협의회, 미국캐놀라협회, 전국계육계란협회, 미국옥수수당정제협회, 옥수수정제협회, 전국계육협의회)는 11월 12일, 이틀 후에 호주의 하워드 총리와 수도 캔버라에서 회담을 갖기로 했던 줄릭

무역대표에게 서한을 보냈다. 그 가운데 이들 10단체는 “정부에 의한 호주와의 FTA 협상개시에 대해서는 인정한다. 그렇다고 최종합의를 수용한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여유를 남기면서도, 지금까지의 FTA 협상 반대자세에서 협의개시에 협력하는 자세로 돌아섰다.

더욱이 USTR 존슨 수석교섭관의 신속한 대응과 정보제공에 대해 감사를 표시한 후, 호주 당국이 미국으로부터의 수입농산물에 적용하는 중요한 SPS 문제에 대해 개선노력을 하고 있는 점, 또 UR 농업협상에서 강력한 동맹관계를 구축한 점, EU가 강구한 미국산 호르몬쇠고기의 수입금지조치를 포함한 불공정한 무역장벽 해소를 위해 협력해 준 점등을 높이 평가하였다.

한편, 가족경영을 주체로 하는 전국농민연맹(NFU)을 비롯하여, 전국목축우육협회(NCBA), 전국칠면조연합회, 미국설탕공업회 등 5 단체는 호주와의 FTA는 시장경쟁을 심화시키고, 시장개방에 의한 영향이 커지는 것이 불가피하므로 정부의 태도에는 찬성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 단체는 FTA 체결에 의한 농산물무역에서의 불이익 등을 피하기 위해 WTO에서의 다자간 협상과 병행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WTO 협상에서 진전을 보지 못한 경우에는 호주와의 FTA 협상은 일단 중지해야 하며, 만약 FTA가 먼저 의회에서 체결되는 사태가 벌어지면 어떻게 해서라도 저지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 4. 부시정권의 적극적 무역외교

줄릭 무역대표는 전국농민연맹으로부터의 서한 내용을 근거로 호주의 하워드 총리에게 “미국 농가들은 호주에 대해 농산물을 잠재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양국간 개선해야 할 품목이 있으나, 농산물무역에서 중요한 상대국이다”는 점을 강조하

고, 양국간 농업문제 해결에 대한 자신감을 표현했다.

그런데 호주의 국별 농산물 수출지역으로 미국은 일본에 이어 두 번째 중요 상대국이다. 이에 대해 미국의 농산물 수출지역으로 호주는 15위 이하의 상대국이다. 미국으로서는 국내 농산물시장을 국제경쟁력이 높은 호주 농산물에 개방하는 것에 이전부터 난색을 표명해 왔으며, 양국 농업관계자의 FTA에 대한 자세는 분명하여 미국내 이해관계 조정은 난항이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릭 무역대표가 적극적인 FTA 외교를 전개하는 데는 몇 가지 배경이 있다. 미국의 2002년 농업법이 지난해 5월 성립함에 따라 국내농업의 보호강화와 진흥을 위해 향후 6년간 약 517억 달러의 추가 예산 투입을 결정한 것, 그 후 8월 TPA(무역협정촉진권)가 가결되어 미국 의회가 부시 대통령에게 무역교섭권을 법적으로 부여한 점, 더욱이 지난 11월 5일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상하원의 과반수를 확보한 점 등에 의해 부시정권의 FTA 협상촉진에 대해 의욕이 작용했던 것이다.

미국은 2005년 1월까지 남미 및 북미대륙 34개국에 의한 포괄적 자유무역협정인 미주자유무역지대(FTAA) 건설을 위해 정력적 외교를 전개하고 있는 한편, 개별 국가와의 FTA 체결을 서두르고 있다. FTAA가 결성되면 약 8억인의 시장이 탄생하여, 역내경제는 확대 EU를 제치고 세계 최대규모가 된다. 차기 대통령선거는 2004년 11월로 예정되어 있어 부시정권은 12월 9일 국내 경기대책을 주안으로 하여 폴 오닐 재무장관에서 존 스노 재무장관으로의 교체를 발표, 한층 강력한 경제각료체제를 확립하였으나, 젊고 정력적인 무역외교에 매진하는 줄릭 무역대표는 유임이 결정되었다.

농산물문제가 최대 초점이 될 이번 미국·호주간 FTA 협상개시 결정은 농산물무역에서 비교우위적 입지에 있는 케언즈 그룹 의장국과 새로운 농업법으로 국내 농업보호를 보다 확고히 해 가기 위해 실질적으로 부족불

제도를 부활시킨 세계 최대의 농산물 수출국인 미국과의 협의가 시작되는 것을 의미하지만, 미국내 농업단체도 의견이 크게 나뉘고 있어 향후 협상은 난항이 예상된다.

미국 정부는 2002년 11월 26일 WTO 전체 가맹국의 공업제품 관세를 2015년까지 완전 철폐하도록 제안하여, 무역촉진과 소비자를 위해 공헌해야 한다고 하였다. WTO에서 농업분야 관세철폐는 쉽지 않은 문제이지만, 미국은 NAFTA(미국, 캐나다, 멕시코) 외에 이스라엘, 요르단과 FTA를 체결한 상태이며, 싱가포르와는 잠정적으로 합의하고 있다. 그리고 2002년 들어 FTAA의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하는 동시에 아프리카에서는 모로코와 남아프리카지역 5개국간, 또 아시아에서는 ASEAN과의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어 FTA 조류는 가속되고 있다.

미국은 신중한 처리를 요하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NAFTA와 같이 관세 철폐 예외품목을 많이 남겨두면서 무역자유화를 추진해 왔다. 이번 호주와의 FTA는 농업문제가 최대과제가 되는 만큼 향후 다른 농업국과의 무역 협상에 커다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 그 동향이 주목된다.

자료 : [http : //www.zenchu-ja.org/wtonougyo.htm](http://www.zenchu-ja.org/wtonougyo.htm)에서  
(김태곤 taegon@krei.re.kr 02-3299-4241 농정연구센터)

## 미국, 농가재해지원대책 강화

2002년 작물과 가축 생산 농가들은 전국적인 가뭄으로 인해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 이에 따라 미국 농업부(USDA)는 농민들이 자연재해로부터 경제적으로 희생할 수 있도록 연방작물보험, 작물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작물의 지원 프로그램, 긴급재해융자 등 항구적으로 승인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미 의회는 2001년과 2002년도 작물과 가축 피해에 대한 추가지원을 고려한바 있지만 아직까지 최종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2002년 9월 상원은 농가재해지원으로 약 60억 달러를 제공한다는 세출법안을 채택했다. 반면 정부는 다른 지원 프로그램의 지출감소 없이는 추가적인 농가지원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한편 USDA는 2001년과 2002년 축산농가에 대한 직접지불로써 7억 5,200만 달러에 달하는 축산보상 프로그램의 시행을 발표한 바 있다.

### 1. USDA 주요 재해지원

USDA는 농산물 생산자들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로부터 경제적으로 희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연방작물보험(federal crop insurance), 작물보험 가입대상 이외의 작물에 대한 지원으로써 무보험지원 프로그램(noninsured assistance program, NAP), 긴급재해융자(emergency disaster loans) 등을 시행했다. 이들 지원 프로그램들은 항구적으로 승인된 규정으로 매년

일정 기금에 의해서 운영된다.

### 1.1. 연방작물보험

연방작물보험은 USDA의 위험관리청(Risk Management Agency, RMA)에 의해서 관리되며, 기상이변이나 기후관련 식물질병 및 병해충 감염 등 예상치 못한 위험으로부터 농산물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다. 보험가입 예정 생산자는 행정적으로 결정된 최종기한을 엄수해야 하며, 이 기한은 작물별로 다양하며, 보통 재배시기와 결부되어 결정된다. 작물보험은 대다수 주요 작물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연방작물보험 프로그램은 1930년대에 시행되었고, 1980년, 1994년, 2000년에 관련 법률이 개정되었다. 공법 제106-224조(P.L. 106-224)인 2000년 농업위험보호법(The Agriculture Risk Protection Act of 2000)은 특별 긴급재해 직접지불(ad-hoc emergency disaster payment)에 대한 요구를 배제하는 대신에 농민의 참여수준을 높이고, 농민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확대된 보험 보조금을 통해 5년 동안 새로운 연방 예산지출 가운데 82억 달러를 이 프로그램에 지원하였다.

2000년 법률개정에 이은 2001년 회계연도 동안 이 프로그램에 소요된 정부 예산비용은 대략 32억 달러에 달했다. 또한 회계연도 2002년 동안 USDA는 농민에 대한 총 보험금 지불액(indemnity payment)이 40억 달러를 초과하는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행 작물보험 프로그램의 경우 보험가입 대상 작물을 재배하는 농민은 작물단수 수준과 가격 적용범위를 선택하고, 단수와 가격 적용범위가 증가함에 따라 상승하는 보험료를 지불한다. 하지만 모든 대상 농민들은 보험료를 지불하지 않고 대재앙보험제도(catastrophic(CAT) coverage)에 가입할 수 있다. CAT coverage에 따라 참여 농민들은 정상 단수(normal yield)의 50%를 초과하는 작물 손실분에 대해 농산물 예상시장가격의 55%까지 보

상(50/55 coverage)을 받을 수 있다.

비록 CAT coverage에 대해 보험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을지라도 농민들은 관리비(administrative fee) 명목으로 대상 작물 당 100달러의 등록비를 해당 카운티에 지불해야 한다. 하자만 경제적 어려움이 극심한 경우 USDA는 이 비용을 배제할 수 있다. CAT coverage를 선택한 농민일지라도 민간 보험회사의 작물보험에 추가로 가입할 기회가 주어진다. 추가 보험료를 농민들이 지불하거나 정부가 보조할 경우, 농민들은 50/55 coverage를 50/100과 85/100(단수의 85%, 추정된 시장가격의 100%)의 범위 내에서 보험혜택 수준을 확대시킬 수 있다.

대다수 보험상품의 경우, 대상 농민은 수입보험(revenue insurance)에 가입할 수 있다. 이런 보험은 생산감소나 농산물가격 하락 등에 의한 수입감소와 상관없이 실제 농가수입 수준이 일정 목표수준 이하로 하락할 때 농민들에게 보험금을 지불한다. USDA는 공법 제 106-224조에 따라 전통 작물보험과 같은 보험료를 수준에서 수입보험 보험금에 대해 보험료를 보조해야 하며, 축산농가에 대한 수입보험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2002년도에 두 가지 새로운 축산시범 사업이 아이오와 주의 돼지 축산농민을 대상으로 수립된 바 있다.

## 1.2. 무보험지원 프로그램(NAP)

현재 작물보험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작물을 재배하는 농민들은 USDA의 무보험지원 프로그램(noninsured assistance program, NAP)의 직접지불 대상이 될 수 있다. NAP는 1994년 연방작물보험개혁법(Federal Crop Insurance Reform Act of 1994)인 공법 제 103-354조(P.L. 103-354)에 따라 항구적인 권한을 부여받았으며, USDA의 농가지원청(Farm Service Agency)에 의해 관리를 받는다. 이 프로그램의 주요 대상자는 연방 작물보험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작물을 재배하는 농민들이다.

NAP는 연례 세출예산안의 적용을 받지 않는 대신에 USDA의 상품신용공사(Commodity Credit Corporation, CCC)의 강제적 기금(mandatory funding)을 통해서 운용된다. NAP의 대상 작물은 작물보험 대상에서 제외된 작물로서 식량 혹은 섬유 생산을 목적으로 재배된 상업용 작물로 벼, 화훼작물, 장식용 묘목, 크리스마스 관련 작물, 잔디, 수생식물, 인삼 등이 이에 해당된다. 목재 펄프지, 펄프 제품 용 나무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NAP 직접지불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생산자는 신청마감 일까지 프로그램 대상 작물을 우선 신청해야 한다. 신청마감 일은 작물별로 다양하지만 보통 일년생 작물의 경우 최종 재배일 이전의 30일까지이다. 대재해작물보험(catastrophic crop insurance)과 같이 NAP 신청자들은 신청시 행정비용(service fee)으로 작물 당 100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NAP 직접지불을 보상받기 위해서 생산자는 자연재해로 인해 적어도 50%의 작물 피해를 입어야 하고, 계획된 작물 재배면적의 35%가 피해를 입어 작물재배에 어려움을 겪어야 한다. 또한 최소손실기준치(minimum loss threshold)를 초과하는 손실분에 대해서 생산자는 해당 품목의 평균 시장가격의 55% 수준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유로 NAP는 과거 정상 생산수준의 50%를 초과하는 손실분에 대해 시장가격의 50%를 지불한다는 의미에서 CAT coverage의 보상범위와 유사하다. 작물보험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작물을 재배하는 농민들의 1인당 지불한도는 10만 달러로 제한되며, 조수입이 200만 달러를 초과하는 농민들은 직접지불 대상에서 제외된다.

USDA는 2002년 회계연도 동안 NAP 직접지불에 총당된 예산이 총 1억 7,4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1.3. 긴급재해융자(EDL)

대통령이나 농업부 장관에 의해서 재해지역(disaster area)으로 선포된 카운티(county)의 농민들은 농업부의 농가지원청(Farm Service Agency, FSA)을 통해서 저리(low-interest)의 긴급재해융자(emergency disaster loan)를 지



원 받을 수 있다. 재해지정지역으로 선포된 카운티에 인접하는 지역의 농민들에게도 긴급재해용자의 지원혜택을 제공한다. 긴급재해용자 기금은 해당 농·어업인, 축산업자들이 생산피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 혹은 물리적 손실(건물, 농기구, 과수원 등의 피해)로부터 회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해당 신청자는 50만 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시장금리보다 낮은 현행 3.75%의 수준에서 실제 생산 및 물리적 손실의 100%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

대상지역으로 선포된 카운티(혹은 인접 카운티)의 개별 농민들은 다음과 같은 긴급재해용자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생산자는 미국의 영구 거주자 혹은 시민이거나 가족농(family farmer) 이어야 한다. 둘째, 생산자는 30% 이상의 작물피해 혹은 가축, 축산물, 부동산 및 동산 등의 물리적 피해를 입어야 한다. 셋째, 일반 은행 등 상업 대부자(commercial lender)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야 하며, 대신 용자금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신청자들은 카운티의 재해지정 기간인 8개월 이내에 접수해야 한다. 부동산 용도 이외의 용자금은 1~7년 이내에 상환해야 하고, 부동산에 대한 물리적 손실에 대한 용자금은 20년 이내에 상환해야 한다. 농민들의 상환 능력이나 기타 물리적 환경에 따라 이들 조건들은 동산 손실에 대해서는 20년까지, 부동산 손실에 대해서는 40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

공법 제87-128조(P.L. 87-128)인 통합농가 및 농촌개발법의 제3조(Title III of the Consolidated Farm and Rural Development Act)에 의거해 긴급재해용자 프로그램은 영구적으로 승인된다. 매년 정규 농업 세출예산안 내에서 긴급재해용자를 위한 세출예산안이 마련된다. 하지만 최근 이 프로그램을 위한 대부분의 기금은 긴급추가세출예산안(emergency supplemental appropriation)을 통해서 조성된다. 최근 공법 제 106-113조(P.L. 106-113)인 2002년 통합세출법(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 of 2000) 내의 대다수 긴급규정들은

5억 4,700만 달러에 달하는 긴급재해용자 기금을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성된 긴급재해용자 기금은 2000년 회계연도에 1억 5,000만 달러, 2001년 회계연도에 9,000만 달러에 달했다. 과거 이월액을 합쳐 2002년 회계연도의 긴급재해용자 기금은 4억 달러에 달했다.

## 2. USDA 긴급재해지원프로그램

최근 의회는 긴급재해지원 계획을 정기적으로 추가지원 했다. 보통 이들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기금은 긴급보조 세출법안을 통해서 조성된다. 이들 주요 특별 농가재해지원 프로그램은 재해직접지불, 축산지원, 긴급보전지원, 수목 및 과수지원 등이 있다. 현재 의회는 2001년과 2002년도 작물 및 가축손실에 대한 특별 지원을 고려하고 있다.

### 2.1. 작물재해직접지불

1998~2000년 작물연도 동안 의회는 자연재해로 인해 작물단수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해당 농민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긴급작물재해직접지불(emergency crop disaster payments)을 승인한 바 있다.

상업용 작물을 재배하는 농민들은 작물의 보험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이들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재해직접지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공법 제106-178조인 2000년 농업세출법(agriculture appropriations act)의 긴급규정은 1999년 작물 손실분에 대해 12억 달러에 달하는 긴급직접지불을 제공하였고, 공법 제106-387조(P.L. 106-387)인 2001년 농업세출법의 긴급규정은 2002년 작물 손실분에 대해서는 18억 달러에 달하는 재해직접지불을 지원하였다.

USDA는 유사한 조건 아래서 재해보상 프로그램의 직접지불을 1998년, 1999년, 2000년 작물연도에 시행하였다. 각 연도의 최소손실 요건은 농민

의 정상 단수의 35% 수준이었다. 35% 기준치를 초과하는 손실분에 대해 농민들은 직접지불을 받을 수 있다. 작물보험 가입대상 작물의 경우 지불 단가(payment rate)는 작물보험 프로그램에서 결정된 품목의 예상시장가격의 65% 수준이었다. 작물보험 가입을 보류한 농민의 지불단가는 작물보험 가격선정(crop insurance price election) 비율의 60% 수준으로 감소했다. 보험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품목을 생산하는 농민은 해당품목의 5년 평균 시장가격의 65% 수준에서 보상을 받았다. 작물보험 가입을 보류한 농민들은 재해직접지불을 보상받는 조건으로써 향후 2년(작물연도 기준) 동안 해당 작물을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재해로 인한 작물의 품질 손상으로 작물 생산액이 감소한 농민은 가용 기금을 통하여 보상을 받았다.

### 2.1.1 최근 의회조치

의회는 2001년과 2002년 작물손실 직접지불의 현행 기금조성 방법에 대한 논쟁을 벌이고 있다. 2002년 10월 9일 상원은 2001년과 2002년 생산연도의 손실분에 대해 2000년 작물연도에 사용한 재해직접지불 방식에 따라 충분한 기금을 조성하고자 2003년 회계연도 국내정부지출금법안(Interior Appropriation bill (H.R. 5093))에 대한 Daschle 수정안인 S.Amdt. 제4481조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하원 또한 위와 유사한 법안인 H.R. 5383을 도입했다.

의회예산국(Congressional Budget Office, CBO)의 전망에 따르면 작물재해직접지불에 소요되는 예산이 45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긴급작물지원(emergency crop assistance)에 관한 기타 관련 법안들이 도입됨에 따라 2001년과 2002년 손실분을 보조하게 되었다.

일부 의원들은 USDA가 2002년 초에 전망한 것보다 2003년 회계연도 농가지원 프로그램에 소요될 예산이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특정 예산이 상쇄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새로운 예산지출을 통해 재해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지원에 찬성하고 있다. 2002년 9월 초까지 CBO는

2003년 회계연도 농가의 품목별지원계획에 소요될 예산이 2002년 초의 전망보다 낮은 수준인 56억 달러에 머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2.2. 축산지원 프로그램

1996년 이전, USDA는 농가 내 사료손실이 심각한 상황에서 농민들의 농외(off-the farm)사료 구매를 보조한 일련의 축산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는 법률 권한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이들 긴급 축산지원 프로그램들은 작물보험이나 NAP에 의해 제공된 연방지원 프로그램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1996년 농업법(the 1996 farm bill)에 의해서 2002년도에 중단되었다.

1996년 농업법에 의해서 승인된 축산지원 프로그램의 중단에도 불구하고, 의회는 다양한 긴급추가조치(emergency supplemental acts) 내에서 특별 축산지원 프로그램(ad-hoc Livestock Assistance Program, LAP)에 매년 예산을 지원하였다. 1996년 이후, 가축사료 손실분에 대한 긴급지원으로 1998년에 2억 7,000만 달러, 1999년에 2억 달러, 2000년에 4억 3,000만 달러를 제공하였다.

가장 최근의 LAP는 2000년 동안 자연재해로 인해서 방목 피해를 입은 해당 축산업자에게 직접지불을 제공했다. 개별 농민들이 지원대상 자격을 받기 이전에, 농민이 거주하는 카운티는 해당 연도의 재해로 인해 적어도 3개월 동안 가용 방목지의 최소 40% 정도가 피해를 입어야 한다.

또한 카운티는 대통령이나 농업부 장관에 의해서 재해지역으로 선포되어야 한다. 일단 카운티가 재해로 인한 지원 요건을 갖출 경우, 최소한도의 피해기준에 도달한 농민들은 직접지불을 통해서 농외 사료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일정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

한편 조수입이 250만 달러 이상인 농민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직접지불은 최대 1인당 4만 달러로 제한된다. 개별적으로 주기적인 권한과

긴급지원기금이 축산보험프로그램(Livestock Indemnity Program, LIP)에 지원된다. 그럼으로써 자연재해로 인해 가축 피해를 입은 축산 농가들은 가축을 보충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

USDA는 재해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가 심각할 경우 발동할 수 있는 기타 권한들을 갖고 있다. USDA에 의해 재해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농민들은 환경보전유보 프로그램(Conservation Reserve Program, CRP)에 의거해 휴경지에서의 방목 가축을 감축하도록 허가받았다. CRP는 참여 농민들로 하여금 매년 연방임대직접지불(federal rental payments)을 받는 조건으로 환경적으로 취약한 농경지를 10년 동안 휴경화 하도록 유도하는 USDA의 농가지원 프로그램이다.

2002년 9월 9일 농업부 장관은 생산자로 하여금 2002년 11월 30일까지 지원프로그램에 신청하도록 하면서 전국을 대상으로 한 목초재배와 방목을 승인했다. 단독으로 USDA는 유제품가격지지프로그램(dairy price support program)에 의거해 탈지분유의 재고 비중을 공포할 수 있는 항구적인 권한을 발휘한다.

### 2.2.1. 최근 의회 조치

2003년 회계연도 국내정부지출금법안(Interior Appropriation bill(H.R. 5093))에 대한 Daschle 수정안이 채택됨에 따라 2000년도와 동일한 지불방식(payment formula)을 사용하여 2001년도와 2002년도 축산지원에 소요될 예산이 제공된다.

CBO는 이들 규정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이 14억 5,0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상원에서 제안한 기타 축산지원조치로는 S. 2728와 S. 2834 및 S. 2768 등이 있다. 또한 이들 조치들에 의해서 2001년도와 2002년도 손실분에 대해 축산지원으로 5억 달러에서 10억 달러의 예산이 지원될 수 있다. S. 2830와 H.R. 5310은 2000년 직접지불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액을 배정할 수 있다. 하지만 S. 2830은 농민들이 2001년도와 2002년도 지원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 2.2.2. 가축보상 프로그램

2002년 9월 19일 USDA는 새로운 2002년도 축산보상프로그램(Livestock Compensation Program, LCP)에 7억 5,200만 달러를 배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프로그램은 2001년과 2002년도에 심각한 사료와 목초지 피해를 입은 축산 농민들을 보상하기 위한 정책이다.

LCP의 신청은 2002년 10월 1일부터 시작되었고, 현재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새로운 프로그램에 따라 직접지불은 2001년 1월 1일과 2002년 9월 19일 동안 농업부 장관에 의해서 재해지역(disaster area)으로 선포된 특정 카운티의 쇠고기, 낙농, 산양 및 면양 생산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직접지불 단가는 낙농우(dairy cattle) 당 31달러 50센트, 육용우(beef cattle) 당 18달러, 500 파운드(lbs) 이상의 특정 가축에 대해 13달러 50센트, 면양 및 산양(sheep or goat) 당 4달러 50센트이다. 직접지불 한도는 1인당 4만 달러로 제한되며, 조수입이 250만 달러를 초과하는 농민은 지불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프로그램을 위한 기금은 일정 비율의 관세수입으로부터 마련되는 제32조 기금(section 32 fund)을 통해서 조성된다.

### 2.3. 긴급보존 프로그램

긴급보존 프로그램(emergency conservation program, ECP)은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지를 복구하는 비용을 분담하고, 심각한 가뭄 동안 수질보전 조치를 수행하기 위해서 농민과 축산업자들을 지원한다.

ECP는 공법 제95-334조(P.L. 95-334)인 1978년 농업신용법(Agricultural Credit Act of 1978)의 제4조에 의거해 영구히 승인되었으며, USDA의 FSA

가 관장한다. 하지만 최근 거의 모든 ECP 예산은 긴급추가 세출예산을 통해서 조성된다.

비용분담(Cost-sharing) 조치는 농경지 잔사 제거, 농경지 등급 분류, 영구 축사, 시설, 장비의 복구와 관련된 조치에 대해 지원될 수 있다. 비용분담 기금은 환경보전 영농방식으로 전환하거나 자연재해 이전의 기존 토지 상태로 복구하는데 지원될 수 있지만, 재해 이전의 기존 환경보전 문제를 다루는데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 2002년 회계연도 동안 관련 기금이 지원된 바는 없다.

자료: CRS Report for Congress. 2002. 11.  
(김상현 ksh3615@krei.re.kr 02-3299-4369 농정연구센터)

## 브라질, 중국에서 옥수수 100만톤 수입

브라질 정부는 2003년 3월까지 약 100만톤의 옥수수 부족을 예상, 중국에서 옥수수 수입을 추진하는 한편, 남미공동시장(MERCOSUR)에 대해 역외 공통관세(9.5%)의 적용 중지를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MERCOSUR는 2월말까지의 수입량(60만톤)에 대해서는 2% 관세 적용에 동의하였다.

브라질의 2002년도 닭고기 생산은 전년도 657만톤보다 11.1% 증가한 730만톤, 수출은 전년도의 125만톤을 28% 상회한 약 160만톤에 달하고 있다. 과거 10년 동안 값싼 국내산 옥수수 사료에 의해 닭고기 생산은 2.5배, 수출은 3.3배 증가하였다.

2000/01 작물년도의 옥수수 생산은 전년대비 22.9% 증가한 4,229만톤으로 기록적인 풍작으로 생산자 가격이 하락하였다. 따라서 2001/02 작물년도에는 생산자가 옥수수의 식부면적을 줄이는 대신 수익성이 높은 대두로 전환하였다. 때문에 동년도 옥수수 식부면적은 전년의 1,297만ha에서 1,233만ha로 4.9% 감소, 또 생산은 식부면적의 감소와 기후불량으로 전년대비 16% 감소한 3,520만톤에 그쳤다. 한편, 국내 수요는 전년대비 약 11% 증가한 결과, 수확이 시작되는 3월말까지 100만톤의 부족이 예상되고 있다.

브라질은 유전자 변형작물(GMO)의 생산, 판매, 수입을 일체 금지하고 있다. 아르헨티나에서 무세로 수입할 수 있지만, 동국은 GM 옥수수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브라질 정부는 GM 옥수수를 생산하지 않는 중국과 100만톤의 수입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동시에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



이 및 우루과이로 구성되는 MERCOSUR에 대해 대역외 수입 옥수수에 부과하는 공통관세의 일시적 적용중지를 요청하였다.

당초, 옥수수 수출국인 아르헨티나는 브라질의 요청을 거부하였으나 브라질이 MERCOSUR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일방적으로 수입관세를 제로로 한다고 주장한 적도 있어 2002년 11월 MERCOSUR는 2003년 2월까지 수입량 60만톤에 대해 현행의 대역외 공통관세 9.5%를 2%로 인하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따라서 2003년 2월까지 필요한 옥수수는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닭고기업계 관계자는 2003년말에는 다시 옥수수 수급이 어려워 질 것으로 보고 있다.

브라질 농업부의 산하단체인 국가공급공사(CONAB)에 의하면 2002/03 작물년도의 옥수수 식부면적은 1기작이 전년의 944만ha에서 931만ha로 1.4% 감소하는 한편, 2기작은 전년의 289만ha를 3.8% 상회한 300만ha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1기작 생산은 전년대비 7.7% 증가한 3.134만톤, 2기작은 전년의 613만톤을 20.4% 상회하는 738만톤으로 예상되고 있다. 1기작과 2기작의 합계 식부면적은 전년수준인 1,231만ha, 생산은 전년의 3,520만톤에서 3,872만톤으로 10%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것은 1ha당 수량이 전년보다 많은 3,145kg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곡물컨설턴트에 의하면 남부의 강우 과잉과 중서부에서의 장기 한발로 대두 식부가 전년보다 20~30일 늦어지고 있다. 이에 의해 대두 수확이 약 1개월 늦어지고, 2기작 옥수수 식부시기가 늦어지는 결과로 생산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2003년말에는 옥수수 수급이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資料: [http : //www.maff.go.jp/kaigai/2002/20021205brazil09a.htm](http://www.maff.go.jp/kaigai/2002/20021205brazil09a.htm)에서  
(김태곤 taegon@krei.re.kr 02-3299-4241 농정연구센터)

## EU, 2002년도 농업소득 3% 감소

유럽통계청(Eurostat)에 따르면 2002년도 EU 15 개국(EU-15)의 1인당 실질 농업소득은 3.0% 감소하였다. 또한 벨기에, 독일, 그리스, 스페인, 프랑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핀란드 등 유로지역(Euro-zone)의 1인당 농업소득은 2.9% 감소하였다.

이러한 EU-15의 1인당 실질 농업소득 감소추세는 실질농업소득 5.9% 감소와 농업노동 투입량의 꾸준한 감소에 기인하고 있다.

회원국 가운데 10개국의 농업소득은 2001년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특히 농업소득 감소폭이 큰 국가는 덴마크로 전년대비 -26.3% 감소했으며, 다음으로 독일 -18.0%, 아일랜드 -11.4%, 벨기에 -7.7%, 네덜란드 -7.5% 등의 순이다. 반면에, 2001년에 비해 농업소득이 증가한 국가로는 핀란드 7.3%, 그리스 5.7%, 영국 3.9%, 스페인 1.2%, 그리고 룩셈부르크 1.0% 등이다.

7개 가맹국들이 제공한 정보에 따르면, 2002년도 1인당 실질농업소득이 전년에 비해 증가한 곳은 슬로바키아 공화국(12.2%)과 라트비아(3.1%)에 불과하다. 폴란드(-22.7%)와 헝가리(-21.2%)의 감소 추세가 두드러졌으며, 그밖에 체코는 6.1%, 리투아니아 3.7%, 에스토니아 2.8% 감소했다.

표 1 2002년도 1인당 농업소득 변화

	전년대비 변화율(%)	2002년도 지수 (1995=100)
EU-15	-3.0	108.1
유로지역	+2.9	112.6
핀란드	+7.3	119.0
그리스	+5.7	115.2
영국	+3.9	67.6
스페인	+1.2	120.0
룩셈부르크	+1.0	93.4
프랑스	-0.9	110.9
스웨덴	-1.5	122.1
이탈리아	-1.6	112.0
포르투갈	-2.2	136.4
오스트리아	-2.8	102.1
네덜란드	-7.5	83.1
벨기에	-7.7	100.8
아일랜드	-11.4	93.9
독일	-18.0	108.5
덴마크	-26.3	84.9

이처럼 2002년도 1인당 실질농업소득의 감소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결과이다. 첫째, 실질 농산물 생산액의 전반적 하락(-3.5%), 둘째 투입재 비용감소(-2.1%)와 실질가치의 평가절하(-0.6%), 셋째 실질가치의 품목불특정 보조금(non product-specific subsidy) 감소(-1.6%)와 품목불특정 세금 감소(-1.0%), 넷째 농업 노동투입량의 지속적인 감소(-2.9%) 등이다.

EU 15개국에서 2002년도 총농업생산액 감소(-3.5%)는 축산(-6.5%)과 곡물(-1.4%) 부문의 생산액 감소가 생산자가격 하락(각각 -8.1%, -2.4%)으로 이어진 것이 주된 이유이다. 그러나, 생산량은 2001년에 비해 오히려 0.9% 증가했다(축산 0.6%, 곡물 1.2%).

돈육(-20.0%), 우유(-7.4%), 가금육(-9.5%)의 생산액은 2001년도에 광우병(BSE)과 구제역(FMD) 등 검역위기 때문에 막대한 피해를 입은 육우(4.7%), 면양 및 산양(4.7%)의 생산액이 회복세로 돌아섰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락 폭을 상쇄시키지 못할 만큼 심각하였고, 결국 이것이 EU 15개국의 축산물 생산액의 폭락에 주요한 요인이 되었다.

게다가 2002년도 EU 15개국 돈육 생산량의 미세한 증가(0.3%)에도 불구하고 생산자 가격의 급격한 하락(-20.3%)이 이어졌다. 2000년과 2001년 꾸준한 증가세에 이은 2002년의 생산액 하락은 EU 15개국의 농업소득 증가세를 반전시킨 주요 요인이다. 두 번째 중요한 요인은 EU 15개국 농업생산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우유 생산량(0.1%)이 안정세를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유가격이 7.2%나 하락한 것에서 찾을 수 있다.

2002년도 EU 15개국의 작물 생산액의 감소(-1.4%)는 감자(-15.5%)와 포도주(-7.0%), 곡물(-1.8%) 등의 생산액 감소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작물 생산액 감소가 농업소득에 미치는 효과는 앞서 언급한 요인에 의한 효과보다 훨씬 미미하다.

EU 15개국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곡물은 가격과 생산량의 변화가 심했지만, 생산액 측면에서는 상당부분 서로 상쇄되어 별 차이가 없다. 곡물 생산량은 2000년도의 기록적인 수준에 육박하였다. EU 15개국의 2001년 대비 감자 생산량은 1.8% 증가하였지만, 가격은 17.2% 정도 하락할 것으로 내다보인다. 포도주의 생산량은 6.7% 감소하였으나 생산자 가격도 0.4% 정도 하락하였다.

자료: Eurostat, news release, ATAT/02/151  
(김상현 ksh3615@krei.re.kr 02-3299-4369 농정연구센터)



## 국제기구 논의동향

---

WTO 농업모델리티 협상동향 (6)

## WTO 농업모델리티 협상동향 (6)

WTO 농업모델리티 확립을 향해 지난 1월 22-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농업위원회 특별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에서 하빈슨 의장은 수출국, 수입국에 상호 양보를 요구하였으나 각국의 입장 차이는 줄어들지 않았다.

한편, EU 집행위원회는 2002년 12월 16일 수치목표가 제시된 새로운 모델리티 제안서를 15개 가맹국의 승인을 받아 이번 농업위원회 특별회의에 제출할 예정이었으나 농민단체의 반발로 제출이 늦어졌다. 결국 EU 각료 이사회는 1월 27일 원안대로 확정, WTO 사무국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수치목표가 제시되면 협상은 급격히 전개될 것이다.

이번 농업위원회 특별회의에서의 주요 논의동향과 EU가 제안한 모델리티 수치목표의 내용과 EU 농민단체의 반응, 그리고 향후 일정과 전망 등에 대하여 정리한다.

### 1. 농업위원회 특별회의 논의동향

이번 농업위원회 특별회의에서는 지난해 12월 하빈슨 의장이 제시한 종합보고서(overview paper)를 가지고 교섭이 진행되었다. 주요 논점은 다음과 같다.

- (1) 시장접근분야의 관세감축에 대해서는 EU, 일본, 한국 등 NTC 그룹과

미국·케언즈 그룹간에 UR방식과 스위스방식을 둘러싸고 대립하였다. 또, 개도국 그룹은 선진국측의 대폭적인 시장접근 개선, 국내보조와 수출보조와 같은 무역왜곡적인 보조의 대폭적인 감축 내지 철폐, 그리고 개도국에 대한 특별하고 차별적인 취급(S&D) 등을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2) 관세할당에 대해서는 NTC 그룹이 접근물량 확대를 전제로 하는 작업가설에 의문을 제시한데 대해 케언즈 그룹은 대폭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3) 특별세이프가드(SSG)에 대해서는 NTC 그룹이 SSG의 유지 또는 확대를 주장한 반면에, 케언즈 그룹과 대부분의 개도국은 선진국의 SSG는 폐지, 개도국만의 SSG 도입을 주장하였다.

(4) 국내보조의 허용대상정책(green box)에 대해서는 케언즈 그룹이나 개도국은 현재 미국, EU, 일본 등 일부 선진국만이 거액의 허용대상보조를 사용하고 있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하여 허용대상보조의 상한을 설정하고, 또 일부 시책은 감축대상으로 하는 등의 제한 설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NTC 그룹은 허용대상정책의 기본적인 요건이나 골격을 유지하여 계속 허용대상으로 할 것을 주장하였다.

(5) 생산제한 직접지불(blue box)에 대해서는 NTC 그룹은 유지를 주장한 반면, 케언즈 그룹과 개도국 그룹은 철폐를 주장하였다.

(6) 감축대상정책(amber box)에 대해서는 케언즈 그룹은 품목별 AMS 감축을 약속하되 단계적으로 철폐할 것, 선진국의 최소허용보조(de-minimis) 철폐할 것 등을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NTC 그룹은 AMS에 의한 감축방식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단지, EU는 미국이 대량으로 사용하고 있는 최소허용보조를 겨냥하여 폐지를 주장하였다.

(7) 수출보조금에 대해서는 케언즈 그룹이 수출보조금 철폐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데 대하여 EU는 도하각료선언에 따라 모든 수출보조가 동등하게 규율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반론하였다. 개도국은 특정수출보조금에 대해 감축대상에서 제외하는 현행 개도국 우대조치의 유지·확충을 주장하였다.

(8) 수출세에 대해서는 남미 케언즈 그룹이 농업협상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또 수출규제 규율을 강화하자는 것에 대해서도 불필요하다고 하였다. 일본은 모든 수출금지 또는 제한을 수출세로 대체하여 양허한 후 감축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2. EU의 새로운 모델리티 제안서

### 2.1. 경과

2002년 12월 16일 EU 집행위원회는 농업모델리티 협상을 위한 새로운 제안을 발표하여 15개 가맹국의 의견을 구하였다. 이번 제안은 농산물 수입국측에서는 최초로 제시된 수치목표이다. 지난 12월에 발표된 의장 종합보고서에서도 각국에 수치목표 제안을 요구한 바 있다.

EU는 새로운 제안을 금년 1월의 WTO 농업협상 특별회의에 제출할 계획으로 가맹국의 승인을 기대하였으나 농민단체의 반발로 결정이 늦어져 오다 지난 1월 27일 외무각료이사회에서 원안대로 결정되었다.

### 2.2. 새로운 모델리티 제안의 개요

#### (1) 시장접근

- ① 관세감축은 UR 방식에 의해 최종 양허수준에서 평균 36%, 최저 15%



인하한다.

② 선진국 및 선발개도국은 후발개도국에서의 모든 수입에 대해 무세·무제한 할당을 제공한다.

③ 선진국은 개도국으로부터의 수입의 50% 이상에 무세를 적용한다. 개도국의 관심품목에 대한 관세상승(tariff escalation)을 대폭 감축한다.

④ 지리적 표시는 권리의 보유자 이외가 사용하고 있는 명칭 리스트를 작성하여, 오해를 초래하거나 부정한 사용을 금지한다.

## (2) 수출경쟁

① 수출보조금은 수량기준으로 대폭적인 감축, 금액기준으로 평균 45% 감축한다. 단지, 품목별 유연성 및 모든 형태의 수출보조금을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② 수출신용의 수출보조금적 요소에 관한 엄격한 규율을 확립한다.

③ 현물원조는 긴급사태 등에 대응한 식량원조에 한정하는 등 식량원조에 관한 규율을 강화한다.

④ 수출국영무역기업에 대해서는 차별적인 원조 및 가격 풀제도 등 불공정한 관행을 규제한다.

## (3) 국내보조

① 감축대상 국내보조(amber box)는 AMS 기준으로 UR협정의 약속수준에서 55% 감축한다.

② 선진국의 최소허용보조(de-minimis)는 철폐한다.

③ 동물보호 등을 위한 보조를 허용보조정책(green box)으로 확대한다.

## (4) 실시기간

○ 실시기간은 2006년을 기점으로 하여 선진국 6년간, 개도국 10년간으로 한다.

## (5) 비무역적 관심사항

- ① 환경보호, 농촌개발, 개도국의 식량안보에 대해서는 그것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농업협정에 적절히 포함한다.
- ② 동물보호에 대해서는 동물보호에 관한 기준을 만족하기 위한 추가적 비용에 대한 보전조치를 감축약속에서 제외한다.

#### (6) 개도국의 특별하고 차별적인 대우

- ① 선진국 및 선발개도국은 후발개도국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해 무세 및 무제한 할당을 제공한다.
- ② 선진국은 개도국으로부터의 수입의 50% 이상에 무세를 적용한다.
- ③ 개도국의 관심품목에 대한 관세상승을 대폭 감축한다.
- ④ UR과 마찬가지로 개도국에 대한 낮은 감축률 및 장기간의 실시기간을 적용한다.
- ⑤ 식량안전보장박스를 도입한다. 즉, 개도국에 대한 특별세이프가드 확대, 개도국의 특정 국내보조에 대해서 허용 등 우대조치를 검토한다.

### 2.3. EU 농민단체 반응

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새로운 수치 제안에 대해 COPA(EU농민단체연합회)와 COGECA(EU농협연합회)는 “UR 협정 내용을 넘어서는 제안을 한 것은 지나치다”면서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2002년 12월 17일 COPA와 COGECA의 회장명의로 발표된 성명서를 요약한다.

EU의 농민과 협동조합은 1999년 EU 이사회가 결정한 WTO 협상권한을 받아들여 지지하고 있다. 이 협상권한은 상정될 수 있는 최종적인 협상결과를 분명히 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가 WTO 농업협상에서 최초의 수치 제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 살펴보면 UR 농업협정보다도 대폭 양보하고 있으며, 몇 개의 면에서는 정도가 지나치다. 이것은 협상과정에서 EU의 협상의 실현성을 손상할 가능성이 있다.

또, 집행위원회의 제안은 완전히 모순되는 점도 있다. 위원회는 국내보조(감축대상정책) 및 수출보조(특히 소맥)에 대해 대폭적이고 일방적인 감축을 제안하고 있다. 다행히도 직접지불(생산제한 직접지불)은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2002년 7월에 제시된 CAP 개혁 중간보고(mid-term review)의 국내개혁에서 집행위원회는 생산제한 직접지불정책의 철폐를 제안한 바 있다. 이 점과도 모순된다.

EU 집행위원회에 의하면 DDA 협상상대국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 제안을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협상상대국이 제출한 제안은 EU에 대한 개방 요구에 집중하고 있다. 따라서 COPA와 COGECA로서는 EU 집행위원회가 역내 농업인에게 상당한 양보를 강요하는 이러한 제안에 대해 큰 충격을 받았다.

식품의 안전성, 추적가능성(traceability), 환경보전 및 동물애호에 대한 사회의 요망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EU의 엄격한 기준에 의한 농업생산을 실시하는 가족농이 가장 적합하다. 이러한 점이 WTO 협상에서 실현되어야 한다.

또, 이번 제안은 개도국에 대해 더욱 혜택을 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EU의 개도국에 대한 양보는 이미 다른 선진국을 앞서고 있다.

2000년도 실적을 보면 EU는 미국, 캐나다, 일본의 합계보다도 많은 농산물을 이미 개도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그리고 2001년 현재 EU는 후발개도국에서의 모든 농산물 수입에 대해 무세로 접근기회를 제공하는 등 시장 접근기회를 더욱 확대하였다. EU는 이러한 노력에 보조를 맞추도록 다른 선진국에게 정당한 요구를 하고 있지만, 현 시점에서 다른 선진국은 그러한 제안조차 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번 수치제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3. 향후 일정과 전망

슈퍼차이 WTO 사무총장은 농업모델리티 1차안을 2월 14일부터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비공식 각료회의 직전까지 제출할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향후 협상은 하빈슨 의장이 2월 14일까지 농업모델리티 1차안을 제시하면, 일본에서의 비공식 각료회의(2월 14-16일)에서 이에 대한 논의를 거쳐 제네바에서의 농업위원회 특별회의(2월 24-28일)에서 모델리티안 1차안에 대한 집중적인 교섭이 이루어 질 것이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하빈슨 의장은 3월 25일까지 농업모델리티 2차안을 작성, 각 가맹국에 제시하게 되면 3월 25-31일에 열리는 농업위원회 특별회의에서 모델리티안 2차안에 대한 교섭을 거쳐 농업모델리티를 최종적으로 확립하는 일정으로 진행될 것이다.

표 1 농업모델리티 협상일정

일자	일정	비고
2월 14일까지	○ 하빈슨 의장, 농업모델리티 1차안 제시	○ 일본 도쿄 개최
2월 14-16일	○ 비공식 각료회의(25개국 참가) - 농업분야가 주요 의제	
2월 24-28일	○ 농업모델리티 1차안 검토	○ 농업위원회 특별회의
3월 25일까지	○ 하빈슨 의장, 농업모델리티 2차안 제시	○ 농업위원회 특별회의
3월 25-31일	○ 농업모델리티 2차안 검토 ○ 농업모델리티 확립	
5월 31일	○ 비농산물시장접근 모델리티 확립	
9월 10-14일	○ 제5회 각료회의	○ 멕시코 칸쿤 개최

하빈슨 의장이 일본 도쿄에서 2월 14일부터 25개국의 각료들이 참가하는 비공식 각료회의까지 모델리티 1차안을 제시하면 우선 이 자리에서 1차안을 둘러싸고 격론이 예상된다.

EU는 농민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치 제안서를 원안대로 결정하였다. 이것이 WTO 사무국에 통보되면 모델리티 1차안 작성작업은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EU 제안에 대하여 NTC 그룹의 일부 국가는 관세인하 등을 둘러싸고 대립이 치열한 미국이나 케언즈 그룹과의 역학관계를 고려하면 일정한 세력을 형성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아래 EU안을 지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에, EU가 제시한 수치가 대폭적인 감축으로 가는 협상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일부에서 지적되고 있다.

그래서 NTC 그룹의 나머지 국가들은 EU와는 별도로 독자적인 수치 제안서를 제시할 것인지, 아니면 EU안을 지지하여 EU안을 중심으로 한 세력형성을 할 것인지를 전략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긴박한 상황이다.

아무튼 농업모델리티 1차안은 지난해 12월에 제시된 의장 종합보고서에서 다수 의견으로 집약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목표수치를 제시하고, 관세 감축 등과 같이 의견 대립이 큰 부분은 공란으로 남겨두는 형식으로 작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태곤 taegon@krei.re.kr 02-3299-4241 농정연구센터)



# 세계 식료수급 정보

---

세계 곡물 수급 동향과 전망(2003. 1)

## 세계 곡물 수급 동향과 전망(2003. 1)

### 1. 전체 곡물의 수급 동향과 전망

2002/03년도 세계 전체 곡물 생산량은 전년 대비 3.0% 감소한 18억 773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전년 전망치보다도 약 5,679만 톤 정도 감소한 수준이다. 주요 곡물인 쌀을 비롯하여 소맥과 옥수수 등 기타잡곡의 생산량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2002/03년도 총공급량은 전년 기말재고량 5억 890만 톤과 생산량을 합친 23억 1,663만 톤으로, 전년보다 약 3.7% 정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2002/03년도 세계곡물 소비량은 전년보다 0.2% 감소한 18억 9,095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1999/00년도에는 생산량과 소비량이 거의 균형을 이루었으나 2000/01년도부터 2001/02년도까지는 소비량이 생산량보다 큰 폭으로 늘어나 그 차이가 확대되었다. 그리고 2002/03년도에도 소비량과 생산량의 차이가 계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곡물 교역량(수출량 기준)도 전년 대비 3.5% 줄어들어 2억 2,852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역량이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6%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1 세계 전체 곡물의 수급동향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0/01	2001/02 (추정)	2002/03(전망)		변동률(%)	
			2002.12	2003.1	전년대비	전월대비
생 산 량	1,841.10	1,864.52	1,809.94	1,807.73	△3.0	△0.1
공 급 량	2,403.33	2,404.50	2,315.11	2,316.63	△3.7	0.1
소 비 량	1,863.36	1,895.60	1,896.36	1,890.95	△0.2	△0.3
교 역 량	232.71	236.73	229.44	228.52	△3.5	△0.4
기말재고량	539.97	508.90	418.76	425.68	△16.4	1.7
기말재고율	29.0	26.8	22.1	22.5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394, January 10, 2003.

곡물 소비량이 생산량을 8,322만 톤 정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2002/03년도 기말재고량은 전년보다 16.4% 감소한 4억 2,568만 톤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기말재고율도 2001/02년도 26.8%에서 22.5%로 4.3% 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 2. 쌀의 수급 동향과 전망

2002/03년도 쌀 생산량은 2001/02년 보다 4.3% 줄어든 3억 8,029만톤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미국의 쌀 생산량이 전년보다 2.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2/03년도 쌀 소비량은 전년 대비 0.6% 감소한 4억 802만 톤으로 전년보다 약 264만 톤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2/03년도 세계 전체 쌀 교역량은 전년 대비 1.7% 늘어난 2,692만 톤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생산량에서 교역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7.1%로 전망된다. 특히 베트남의 수출량이 전년보다 32.8% 늘어난 425만 톤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2 국제 쌀(정곡기준) 수급 동향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0/01	2001/02 (추정)	2002/03(전망)		변동률(%)	
			2002.12	2003.1	전년대비	전월대비
생 산 량	397.76	397.27	381.79	380.29	△4.3	△0.4
공 급 량	543.08	543.44	513.77	512.66	△5.7	△0.2
소 비 량	396.91	410.66	407.77	408.02	△0.6	0.1
교 역 량	24.12	26.48	26.65	26.92	1.7	1.0
기말재고량	146.17	132.84	104.89	105.10	△20.9	0.2
기말재고율	36.8	32.3	25.7	25.8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394, January 10, 2003.

세계 쌀 기말재고량은 전년 대비 20.9%가 줄어든 1억 510만 톤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을 제외한 주요 쌀 생산국의 재고량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2002/03년도 기말재고율은 25.8%로 2001/02년도의 32.3%보다 약 6.5% 포인트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 3. 소맥의 수급 동향과 전망

2002/03년도 세계 밀 생산량은 5억 6,751만 톤으로 전년보다 2.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을 제외한 미국, 호주, 캐나다, 중국 등 주요 소맥 생산국의 생산량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2002/03년도 세계 밀 소비량은 2001/02년 5억 8,465만 톤보다 약 111만 톤 증가한 5억 9,575만 톤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밀의 국제 교역량은 2001/02년 1억 881만 톤까지 늘어났으나, 2002/03년에는 1억 292만 톤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량에 대한 교역량의 비율은 18.1%로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표 3 국제 소맥 수급 동향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0/01	2001/02 (추정)	2002/03(전망)		변동률(%)	
			2002.12	2003.1	전년대비	전월대비
생 산 량	583.71	579.47	568.72	567.51	△2.1	△0.2
공 급 량	790.75	784.44	767.30	767.30	△2.2	0.0
소 비 량	585.78	584.65	597.81	595.75	1.9	△0.3
교 역 량	102.82	108.81	102.60	102.92	△5.4	0.3
기말재고량	204.97	199.79	169.49	171.55	△14.1	1.2
기말재고율	35.0	34.2	28.4	28.8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394, January 10, 2003.

2002/03년 기말재고량은 1억 7,155만 톤으로 전년보다 14.1%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재고량이 대폭 줄어들고, 기말재고율도 전년의 34.2%에서 28.8%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4. 옥수수 수급 동향과 전망

2002/03년도 세계 옥수수 생산량은 5억 9,052만 톤으로 전년보다 1.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아르헨티나, 멕시코, 동남아시아 등 주요 생산국의 생산량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2002/03년의 소비량은 전년 대비 0.3% 감소한 6억 1,730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소비량이 생산량을 2,678만 톤 정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2/03년 세계 옥수수 교역량은 전년보다 0.1% 감소한 7,392만 톤이고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5%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 수출량 중 미국과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65.3%, 13.5%로 이들 두 국가가 약 78.8%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4 국제 옥수수 수급 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0/01	2001/02 (추정)	2002/03(전망)		변동률(%)	
			2002.12	2003.1	전년대비	전월대비
생 산 량	587.34	597.17	591.15	590.52	△1.1	△0.1
공 급 량	758.43	750.67	720.81	722.09	△3.8	0.2
소 비 량	604.93	619.10	620.98	617.30	△0.3	△0.6
교 역 량	77.37	73.99	74.03	73.92	△0.1	△0.1
기말재고량	153.50	129.66	98.53	99.83	△23.0	1.3
기말재고율	25.4	20.9	15.9	16.2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394, January 10, 2003.

2002/03년 옥수수 소비량이 생산량을 초과하기 때문에 기말재고량은 전년보다 23.0% 줄어든 9,983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전년보다 2,983만 톤 정도 줄어든 수준이다. 주요 옥수수 생산국인 중국, 미국, EU의 기말재고량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기 때문이다. 2002/03년도 기말재고율도 전년보다 4.7% 포인트 줄어든 16.2%가 될 전망이다.

## 5. 대두의 수급 동향과 전망

2002/03년도 세계 대두 생산량은 1억 9,089만 톤으로 전년보다 3.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의 생산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대두 소비량은 전년보다 4.3% 늘어난 1억 9,195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소비량이 생산량을 106만 톤 정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두 교역량은 전년보다 11.6% 증가한 6,140만 톤 될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교역량의 비중은 32.2%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세계 수출량에서 미국이 41.22%, 브라질이 33.6%, 아르헨티나가 15.8%의 비

중을 차지, 이들 3국의 수출비중이 90.62%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대두의 기말 재고량은 3,065만 톤으로 전망되어 전년의 3,219만 톤과 비교하여 4.8% 정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기말재고율은 전년보다 약 1.5% 포인트 낮은 16.0%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5 국제 대두 수급 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0/01	2001/02 (추정)	2002/03(전망)		변동률(%)	
			2002.12	2003.1	전년대비	전월대비
생 산 량	175.10	184.30	188.80	190.89	3.6	1.1
공 급 량	203.12	215.22	220.99	223.08	3.7	0.9
소 비 량	172.06	184.02	191.19	191.95	4.3	0.4
교 역 량	55.08	55.00	60.88	61.40	11.6	0.9
기말재고량	30.92	32.19	29.35	30.65	△4.8	4.4
기말재고율	18.0	17.5	15.4	16.0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394, January 10, 2003.

표 6 세계 쌀(정곡기준) 수급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0/01	2001/02 (추정)	2002/03(전망)		변동률(%)	
			2002.12	2003.1	전년대비	전월대비
공급량	543.08	543.44	513.77	512.66	△5.7	△0.2
기초재고량	145.32	146.17	131.98	132.37	△9.4	0.3
생산량	397.76	397.27	381.79	380.29	△4.3	△0.4
미국	5.94	6.74	6.64	6.60	△2.1	△0.6
태국	16.90	16.50	16.50	16.50	0.0	0.0
베트남	20.47	21.04	20.90	20.90	△0.7	0.0
인도네시아	32.80	32.96	32.83	32.83	△0.4	0.0
중국	131.54	124.31	121.80	121.80	△2.0	0.0
일본	8.64	8.24	8.08	8.08	△1.9	0.0
수입량	21.50	25.44	25.57	25.64	0.8	0.3
인도네시아	1.50	3.50	3.25	3.25	△7.1	0.0
중국	0.27	0.23	0.30	0.30	30.4	0.0
일본	0.68	0.70	0.70	0.70	0.0	0.0
소비량	396.91	410.66	407.77	408.02	△0.6	0.1
미국	3.68	3.88	3.92	3.92	1.0	0.0
태국	9.40	9.50	9.60	9.60	1.1	0.0
베트남	17.25	17.40	17.60	17.60	1.1	0.0
인도네시아	35.88	36.36	36.79	36.79	1.2	0.0
중국	134.36	134.58	134.80	134.80	0.2	0.0
일본	9.00	9.00	8.98	8.98	△0.2	0.0
수출량	24.12	26.48	26.65	26.92	1.7	1.0
미국	2.59	2.94	3.29	3.29	11.9	0.0
태국	7.52	7.20	7.75	7.75	7.6	0.0
베트남	3.53	3.20	4.25	4.25	32.8	0.0
기말재고량	146.17	132.84	104.89	105.10	△20.9	0.2
미국	0.89	1.22	1.02	1.00	△18.0	△2.0
태국	1.69	1.51	0.86	0.66	△56.3	△23.3
인도네시아	4.80	4.90	4.19	4.19	△14.5	0.0
중국	94.10	82.30	67.35	67.35	△18.2	0.0
일본	1.67	1.46	1.06	1.06	△27.4	0.0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394, January 10, 2003.

표 7 세계 소맥 수급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0/01	2001/02 (추정)	2002/03(전망)		변동률(%)	
			2002.12	2003.1	전년대비	전월대비
공급량	790.75	784.44	767.30	767.30	△2.2	0.0
기초재고량	207.04	204.97	198.58	199.79	△2.5	0.6
생산량	583.71	579.47	568.72	567.51	△2.1	△0.2
미국	60.76	53.26	43.99	43.99	△17.4	0.0
호주	23.77	24.00	10.50	10.00	△58.3	△4.8
캐나다	26.52	20.57	15.70	15.70	△23.7	0.0
EU15	104.78	91.73	103.70	103.70	13.0	0.0
중국	99.64	93.87	92.00	92.00	△2.0	0.0
러시아	34.45	46.90	49.50	49.50	5.5	0.0
수입량	101.53	108.49	103.12	104.72	△3.5	1.6
EU15	3.16	9.82	8.00	9.50	△3.3	18.8
브라질	7.20	6.78	7.00	7.20	6.2	2.9
북아프리카	18.28	17.26	17.00	17.20	△0.3	1.2
파키스탄	0.05	0.35	0.50	0.50	42.9	0.0
인도	0.44	0.03	0.05	0.05	66.7	0.0
러시아	1.60	0.55	0.50	0.50	△9.1	0.0
소비량	585.78	584.65	597.81	595.75	1.9	△0.3
미국	36.30	32.72	32.01	30.65	△6.3	△4.2
EU15	91.98	92.26	97.20	98.20	6.4	1.0
중국	110.28	108.74	106.11	106.11	△2.4	0.0
파키스탄	20.50	19.80	19.75	19.75	△0.3	0.0
러시아	35.16	38.08	41.50	40.50	6.4	△2.4
수출량	102.82	108.81	102.60	102.92	△5.4	0.3
미국	28.90	26.16	25.86	25.17	△3.8	△2.7
캐나다	17.32	16.27	8.00	8.00	△50.8	0.0
EU15	15.23	11.49	15.50	15.00	30.5	△3.2
기말재고량	204.97	199.79	169.49	171.55	△14.1	1.2
미국	23.85	21.15	9.46	11.36	△46.3	20.1
EU15	13.38	11.18	10.19	11.19	0.1	9.8
중국	91.88	76.59	61.97	61.97	△19.1	0.0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394, January 10, 2003.

표 8 세계 옥수수 수급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0/01	2001/02 (추정)	2002/03(전망)		변동률(%)	
			2002.12	2003.1	전년대비	전월대비
공급량	758.43	750.67	720.81	722.09	△3.8	0.2
기초재고량	171.09	153.50	129.66	131.57	△14.3	1.5
생산량	587.34	597.17	591.15	590.52	△1.1	△0.1
미국	251.85	241.49	228.70	228.80	△5.3	0.0
아르헨티나	15.40	14.40	13.50	13.50	△6.3	0.0
EU15	37.46	38.81	39.20	38.90	0.2	△0.8
멕시코	17.92	20.40	19.00	19.00	△6.9	0.0
동남아시아	15.17	15.07	14.52	14.52	△3.6	0.0
중국	106.00	114.09	125.00	125.00	9.6	0.0
수입량	75.39	73.42	73.42	73.59	0.2	0.2
EU15	2.86	2.95	2.50	2.50	△15.3	0.0
일본	16.34	16.40	15.50	15.50	△5.5	0.0
멕시코	5.93	4.03	6.50	6.50	61.3	0.0
동남아시아	4.24	3.78	3.76	3.76	△0.5	0.0
한국	8.74	8.61	8.50	8.50	△1.3	0.0
소비량	604.93	619.10	620.98	617.30	△0.3	△0.6
미국	198.10	201.45	200.00	199.27	△1.1	△0.4
EU15	40.30	41.60	41.70	41.40	△0.5	△0.7
일본	16.20	16.30	15.70	15.70	△3.7	0.0
멕시코	24.00	24.50	25.50	25.50	4.1	0.0
동남아시아	18.85	18.75	18.24	18.24	△2.7	0.0
한국	8.62	8.74	8.46	8.46	△3.2	0.0
중국	118.00	120.00	124.00	122.00	1.7	△1.6
수출량	77.37	73.99	74.03	73.92	△0.1	△0.1
미국	49.31	47.98	48.90	48.26	0.6	△1.3
아르헨티나	9.68	9.50	8.10	8.60	△9.5	6.2
중국	7.28	8.61	10.00	10.00	16.1	0.0
기말재고량	153.50	129.66	98.53	99.83	△23.0	1.3
미국	48.24	40.63	21.54	21.41	△47.3	△0.6
아르헨티나	0.64	0.70	0.72	0.72	2.9	0.0
EU15	3.38	3.49	3.34	3.39	△2.9	1.5
중국	83.13	66.65	57.75	57.75	△13.4	0.0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394, January 10, 2003.

표 9 세계 대두 수급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0/01	2001/02 (추정)	2002/03(전망)		변동률(%)	
			2002.12	2003.1	전년대비	전월대비
공급량	203.12	215.22	220.99	223.08	3.7	0.9
기초재고량	28.02	30.92	32.19	32.19	4.1	0.0
생산량	175.10	184.30	188.80	190.89	3.6	1.1
미국	75.06	78.67	73.20	74.29	△5.6	1.5
아르헨티나	27.80	30.00	32.50	33.50	11.7	3.1
브라질	39.00	43.50	49.00	49.00	12.6	0.0
중국	15.40	15.41	16.40	16.40	6.4	0.0
수입량	54.94	55.99	60.42	60.92	8.8	0.8
EU15	18.92	19.92	20.17	20.17	1.3	0.0
일본	4.77	5.02	4.90	4.90	△2.4	0.0
중국	13.24	10.38	14.00	14.50	39.7	3.6
소비량	172.06	184.02	191.19	191.95	4.3	0.4
미국	49.20	50.90	49.67	49.54	△2.7	△0.3
아르헨티나	18.40	22.04	23.79	24.29	10.2	2.1
브라질	24.69	26.82	30.26	30.26	12.8	0.0
EU15	18.44	19.55	19.57	19.57	0.1	0.0
일본	5.08	5.21	5.14	5.14	△1.3	0.0
중국	26.70	28.12	30.15	30.55	8.6	1.3
수출량	55.08	55.00	60.88	61.40	11.6	0.9
미국	27.10	28.92	24.49	25.31	△12.5	3.3
아르헨티나	7.42	6.00	9.70	9.70	61.7	0.0
브라질	15.47	15.00	20.90	20.60	37.3	△1.4
기말재고량	30.92	32.19	29.35	30.65	△4.8	4.4
미국	6.74	5.66	4.76	5.16	△8.8	8.4
아르헨티나	7.93	10.29	9.70	10.20	△0.9	5.2
브라질	8.38	11.15	9.89	10.19	△8.6	3.0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394, January 10, 2003.

(성명환 mhsung@krei.re.kr 02-3299-4366 농산업경제연구센터)





## 통 계 자 료

---

- 표 1 세계 쇠고기통계(전체)
- 표 2 세계 쇠고기 통계(경제발전국)
- 표 3 세계 쇠고기 통계(개발도상국)
- 표 4 세계 쇠고기 통계(아시아)
- 표 5 세계 쇠고기 통계(유럽)
- 표 6 세계 쇠고기 통계(북미)
- 표 7 세계 쇠고기 통계(남미)
- 표 8 세계 쇠고기 통계(아프리카)
- 표 9 세계 쇠고기 통계(오세아니아)

표 1 세계 쇠고기통계(전체)

연도	도축두수 (천마리)	생산량 (천톤)	수출량 (천톤)	수입량 (천톤)	소비량 (천톤)	재고율 (%)	자급률 (%)
1961	118,731	24,474	1,522	1,435	24,368	1.2	100.4
1962	125,366	25,629	1,971	1,634	25,295	1.1	101.3
1963	128,852	26,979	2,231	1,822	26,566	1.2	101.5
1964	128,016	26,176	1,994	2,015	26,143	1.5	100.1
1965	128,831	28,065	1,913	1,768	27,939	1.3	100.5
1966	131,509	29,673	2,039	2,053	29,692	1.3	99.9
1967	133,784	31,261	2,284	2,196	31,167	1.2	100.3
1968	138,428	32,747	2,413	2,350	32,674	1.2	100.2
1969	142,762	33,935	2,817	2,587	33,691	1.4	100.7
1970	142,094	34,303	2,921	2,706	34,146	1.3	100.5
1971	137,889	34,078	2,802	2,536	33,809	1.3	100.8
1972	169,539	34,958	3,332	3,004	34,610	1.3	101.0
1973	173,832	35,792	3,445	3,254	35,498	1.6	100.8
1974	184,144	38,235	2,824	2,630	37,826	2.3	101.1
1975	208,419	41,597	3,327	2,855	41,065	2.3	101.3
1976	217,707	43,549	3,935	3,239	42,652	2.7	102.1
1977	213,765	43,783	4,343	3,742	43,263	2.5	101.2
1978	210,940	43,541	4,542	3,730	42,760	2.4	101.8
1979	198,336	41,773	4,533	4,036	41,224	2.8	101.3
1980	203,067	42,921	4,528	3,901	42,374	2.5	101.3
1981	204,515	43,232	4,625	3,812	42,354	2.7	102.1
1982	207,797	43,332	4,798	3,866	42,406	2.7	102.2
1983	206,160	43,428	4,683	3,985	42,523	3.1	102.1
1984	209,572	44,481	4,576	3,864	43,374	4.0	102.5
1985	215,750	45,492	4,916	3,904	44,220	4.5	102.9
1986	224,113	47,497	5,461	4,497	46,862	3.6	101.4
1987	222,855	48,692	5,304	4,283	47,543	3.8	102.4
1988	225,712	49,460	6,882	5,606	48,262	3.6	102.5
1989	227,920	50,232	7,186	5,979	49,451	2.6	101.6
1990	233,130	51,365	7,156	6,073	49,193	4.9	104.4
1991	231,031	51,100	7,336	6,134	49,787	5.1	102.6
1992	229,818	50,170	7,314	5,834	48,620	5.3	103.2
1993	221,644	47,628	7,053	5,562	46,600	4.6	102.2
1994	223,408	48,028	7,312	5,988	47,142	3.5	101.9
1995	226,677	48,426	6,999	5,919	47,566	3.0	101.8
1996	222,199	47,440	6,626	5,846	46,331	3.7	102.4
1997	230,478	49,127	7,128	6,383	48,198	3.9	101.9
1998	227,513	48,846	6,880	6,100	48,273	3.5	101.2
1999	227,317	49,612	7,423	6,734	49,383	2.5	100.5
2000	228,995	50,085	5,811	5,026	49,320	2.4	101.5
2001	225,899	49,199	5,733	4,957	48,278	2.6	101.9
2002	228,721	49,715	5,992	5,231	49,071	2.4	101.3

표 2 세계 쇠고기 통계(경제발전국)

연도	도축두수 (천마리)	생산량 (천톤)	수출량 (천톤)	수입량 (천톤)	소비량 (천톤)	재고율 (%)	자급률 (%)
1961	80,757	15,429	803	1,329	15,935	1.3	96.8
1962	83,894	15,711	1,029	1,441	16,128	1.3	97.4
1963	85,934	16,262	1,103	1,665	16,822	1.5	96.7
1964	88,051	16,074	1,029	1,890	16,880	1.8	95.2
1965	88,664	17,613	1,017	1,626	18,237	1.6	96.6
1966	89,581	18,435	1,069	1,856	19,229	1.5	95.9
1967	89,556	18,994	1,160	2,055	19,881	1.5	95.5
1968	90,496	19,530	1,229	2,176	20,465	1.5	95.4
1969	90,518	19,810	1,341	2,395	20,841	1.9	95.0
1970	90,531	20,491	1,539	2,443	21,399	1.9	95.8
1971	90,698	20,852	1,697	2,329	21,496	1.8	97.0
1972	87,955	20,824	1,858	2,822	21,768	1.9	95.7
1973	87,331	20,603	2,146	3,081	21,432	2.4	96.1
1974	95,289	22,447	1,942	2,207	22,548	3.4	99.5
1975	106,633	23,836	2,438	2,367	23,752	3.2	100.3
1976	109,257	24,986	2,612	2,818	24,930	4.2	100.2
1977	108,794	24,717	2,969	3,011	24,866	3.8	99.4
1978	104,055	24,150	3,048	3,150	24,253	3.8	99.6
1979	94,433	22,757	3,125	3,215	22,837	4.0	99.7
1980	94,030	22,962	3,249	2,958	22,735	3.8	101.0
1981	92,871	23,032	3,153	2,672	22,617	3.5	101.8
1982	95,288	23,084	3,210	2,820	22,656	3.7	101.9
1983	95,286	23,405	3,157	2,893	22,907	4.7	102.2
1984	96,654	23,886	3,254	2,860	23,107	6.3	103.4
1985	95,617	24,117	3,518	3,087	23,520	6.9	102.5
1986	97,139	24,670	4,165	3,212	23,999	5.6	102.8
1987	94,942	24,403	4,127	3,436	23,679	5.8	103.1
1988	90,391	23,858	4,116	3,676	23,383	6.0	102.0
1989	87,317	23,439	4,609	3,699	22,950	4.3	102.1
1990	88,431	23,860	4,631	3,778	22,630	6.0	105.4
1991	89,256	24,450	5,165	4,005	23,123	6.6	105.7
1992	87,842	24,335	5,352	4,202	23,034	7.3	105.7
1993	84,702	23,453	5,282	4,298	22,712	6.3	103.3
1994	83,563	23,674	5,493	4,476	23,054	4.5	102.7
1995	84,429	24,002	5,400	4,286	23,059	3.7	104.1
1996	86,421	24,160	5,068	3,943	22,717	5.2	106.3
1997	87,722	24,447	5,471	4,184	22,921	6.1	106.7
1998	86,016	24,292	5,417	4,280	23,302	5.4	104.2
1999	86,014	24,717	5,821	4,586	23,900	3.5	103.4
2000	57,730	17,272	3,469	2,716	16,493	2.9	104.7
2001	56,934	16,952	3,501	2,753	16,139	3.3	105.0
2002	55,967	16,756	3,535	2,745	16,069	2.7	104.3

표 3 세계 쇠고기 통계(개발도상국)

연도	도축두수 (천마리)	생산량 (천톤)	수출량 (천톤)	수입량 (천톤)	소비량 (천톤)	재고율 (%)	자급률 (%)
1961	37,974	9,045	719	106	8,433	1.0	107.3
1962	41,472	9,918	942	193	9,167	0.9	108.2
1963	42,918	10,717	1,128	157	9,744	0.8	110.0
1964	39,965	10,102	965	125	9,263	0.9	109.1
1965	40,167	10,452	896	142	9,702	0.8	107.7
1966	41,928	11,238	970	197	10,463	0.8	107.4
1967	44,228	12,267	1,124	141	11,286	0.7	108.7
1968	47,932	13,217	1,184	174	12,209	0.7	108.3
1969	52,244	14,125	1,476	192	12,850	0.6	109.9
1970	51,563	13,812	1,382	263	12,747	0.2	108.3
1971	47,191	13,226	1,105	207	12,313	0.4	107.4
1972	81,584	14,134	1,474	182	12,842	0.4	110.1
1973	86,501	15,189	1,299	173	14,066	0.3	108.0
1974	88,855	15,788	882	423	15,278	0.8	103.3
1975	101,786	17,761	889	488	17,313	1.0	102.6
1976	108,450	18,563	1,323	421	17,722	0.6	104.8
1977	104,971	19,066	1,374	731	18,397	0.8	103.6
1978	106,885	19,391	1,494	580	18,507	0.6	104.8
1979	103,903	19,016	1,408	821	18,387	1.2	103.4
1980	109,037	19,959	1,279	943	19,639	1.1	101.6
1981	111,644	20,200	1,472	1,140	19,737	1.7	102.3
1982	112,509	20,248	1,588	1,046	19,750	1.5	102.5
1983	110,874	20,023	1,526	1,092	19,616	1.4	102.1
1984	112,918	20,595	1,322	1,004	20,267	1.4	101.6
1985	120,133	21,375	1,398	817	20,700	1.8	103.3
1986	126,974	22,827	1,296	1,285	22,863	1.4	99.8
1987	127,913	24,289	1,177	847	23,864	1.8	101.8
1988	135,321	25,602	2,766	1,930	24,879	1.3	102.9
1989	140,603	26,793	2,577	2,280	26,501	1.2	101.1
1990	144,699	27,505	2,525	2,295	26,563	4.0	103.5
1991	141,775	26,650	2,171	2,129	26,664	3.8	100.0
1992	141,976	25,835	1,962	1,632	25,586	3.6	101.0
1993	136,942	24,175	1,771	1,264	23,888	3.0	101.2
1994	139,845	24,354	1,819	1,512	24,088	2.5	101.1
1995	142,248	24,424	1,599	1,633	24,507	2.3	99.7
1996	135,778	23,280	1,558	1,903	23,614	2.3	98.6
1997	142,756	24,680	1,657	2,199	25,277	1.9	97.6
1998	141,497	24,554	1,463	1,820	24,971	1.7	98.3
1999	141,303	24,895	1,602	2,148	25,483	1.5	97.7
2000	144,056	25,351	1,697	1,862	25,527	1.4	99.3
2001	143,565	25,203	1,700	1,794	25,399	0.8	99.2
2002	146,454	25,729	1,819	2,019	25,946	0.7	99.2

표 4 세계 쇠고기 통계(아시아)

연도	도축두수 (천마리)	생산량 (천톤)	수출량 (천톤)	수입량 (천톤)	소비량 (천톤)	재고율 (%)	자급률 (%)
1961	2,790	385	0	20	404	0.0	95.3
1962	2,954	409	0	27	434	0.0	94.2
1963	3,301	464	0	20	484	0.0	95.9
1964	3,634	525	0	25	551	0.0	95.3
1965	3,480	511	0	28	540	0.0	94.6
1966	3,313	467	0	31	498	0.0	93.8
1967	3,187	464	0	31	494	0.0	93.9
1968	3,191	470	0	37	507	0.0	92.7
1969	3,625	555	0	44	599	0.0	92.7
1970	3,744	597	0	43	640	0.0	93.3
1971	3,668	607	0	69	677	0.0	89.7
1972	3,503	609	0	89	700	0.0	87.0
1973	4,373	719	2	186	903	0.0	79.6
1974	4,986	798	5	81	886	4.1	90.1
1975	10,899	1,533	4	102	1,610	3.5	95.2
1976	10,221	1,421	9	180	1,614	2.5	88.0
1977	10,350	1,487	14	185	1,651	2.9	90.1
1978	10,489	1,548	20	290	1,797	2.5	86.1
1979	9,463	1,479	39	337	1,752	3.9	84.4
1980	9,903	1,551	59	264	1,758	3.8	88.2
1981	9,840	1,597	72	318	1,823	4.8	87.6
1982	10,123	1,647	82	378	1,948	4.2	84.5
1983	11,231	1,747	63	399	2,090	3.6	83.6
1984	11,615	1,895	66	352	2,170	4.0	87.3
1985	12,730	2,066	63	348	2,359	3.3	87.6
1986	20,654	3,086	83	393	3,406	2.0	90.6
1987	21,302	3,283	96	454	3,642	1.8	90.1
1988	24,247	3,681	121	558	4,072	2.8	90.4
1989	26,042	3,952	131	736	4,487	4.1	88.1
1990	28,028	4,234	244	813	4,783	4.2	88.5
1991	25,584	3,848	355	852	4,408	3.2	87.3
1992	27,309	4,088	230	946	4,811	2.8	85.0
1993	30,916	4,224	324	1,021	4,907	3.0	86.1
1994	37,559	5,271	419	1,210	6,069	2.3	86.8
1995	44,406	6,242	305	1,388	7,319	2.0	85.3
1996	38,907	5,462	309	1,354	6,477	2.7	84.3
1997	47,373	6,876	318	1,408	7,935	2.6	86.7
1998	51,909	7,490	335	1,321	8,443	2.8	88.7
1999	54,051	7,781	318	1,499	8,932	3.0	87.1
2000	56,266	8,078	355	1,655	9,358	3.1	86.3
2001	58,440	8,290	436	1,463	9,370	2.5	88.5
2002	60,991	8,584	467	1,494	9,646	2.1	89.0

표 5 세계 쇠고기 통계(유럽)

연도	도축두수 (천마리)	생산량 (천톤)	수출량 (천톤)	수입량 (천톤)	소비량 (천톤)	재고율 (%)	자급률 (%)
1961	39,377	9,361	502	915	9,782	0.6	95.7
1962	42,164	10,192	633	1,213	10,768	0.6	94.7
1963	42,520	10,672	629	1,289	11,366	0.5	93.9
1964	39,320	10,269	492	1,286	11,036	0.8	93.0
1965	37,652	10,502	499	1,236	11,220	0.9	93.6
1966	39,544	11,486	588	1,365	12,290	0.6	93.5
1967	41,704	12,683	824	1,398	13,237	0.7	95.8
1968	43,086	13,391	904	1,457	13,938	0.7	96.1
1969	44,280	13,714	935	1,576	14,384	0.9	95.3
1970	44,342	13,868	874	1,591	14,582	1.0	95.1
1971	43,771	14,068	913	1,423	14,586	0.9	96.5
1972	73,835	14,050	878	1,767	14,943	0.9	94.0
1973	76,688	14,669	1,013	1,935	15,511	1.4	94.6
1974	83,760	16,603	1,274	1,551	16,628	2.8	99.8
1975	85,992	16,925	1,534	1,677	17,053	2.9	99.2
1976	86,248	17,061	1,434	1,767	17,321	3.2	98.5
1977	82,722	17,077	1,588	2,321	17,836	3.1	95.7
1978	83,714	17,287	1,613	1,958	17,754	2.4	97.4
1979	84,685	17,635	1,805	2,142	17,873	3.3	98.7
1980	85,592	17,596	2,168	2,282	17,708	3.4	99.4
1981	83,537	17,194	2,193	2,207	17,237	3.3	99.8
1982	83,367	16,999	1,969	2,136	17,126	3.6	99.3
1983	84,091	17,547	2,066	2,280	17,571	4.6	99.9
1984	87,413	18,413	2,379	2,244	17,911	6.5	102.8
1985	87,548	18,640	2,555	2,094	17,950	7.8	103.8
1986	87,655	19,124	2,955	2,094	18,498	6.3	103.4
1987	87,777	19,627	2,710	2,063	18,926	6.4	103.7
1988	80,003	18,041	3,779	3,138	17,480	6.5	103.2
1989	78,209	17,908	4,043	3,223	17,499	4.2	102.3
1990	83,331	19,136	3,792	3,192	17,478	10.4	109.5
1991	82,951	18,928	3,740	3,215	18,245	10.9	103.7
1992	79,429	17,638	3,684	2,769	16,654	12.3	105.9
1993	71,436	15,642	3,397	2,625	15,457	9.6	101.2
1994	65,923	14,299	3,324	2,802	14,238	6.7	100.4
1995	59,699	13,057	2,973	2,774	13,121	5.2	99.5
1996	57,000	12,550	2,599	2,740	12,322	8.3	101.8
1997	55,657	12,129	2,740	3,008	12,305	9.1	98.6
1998	51,511	11,503	2,507	2,597	11,798	7.7	97.5
1999	49,547	11,284	2,765	2,900	11,867	3.9	95.1
2000	20,445	3,393	230	502	3,670	1.6	92.5
2001	18,615	3,184	151	697	3,747	1.1	85.0
2002	17,985	3,079	126	774	3,727	1.1	82.6

표 6 세계 쇠고기 통계(북미)

연도	도축두수 (천마리)	생산량 (천톤)	수출량 (천톤)	수입량 (천톤)	소비량 (천톤)	재고율 (%)	자급률 (%)
1961	40,653	8,456	69	484	8,858	1.3	95.5
1962	41,003	8,256	68	369	8,561	1.3	96.4
1963	41,766	8,557	74	487	8,929	1.7	95.8
1964	46,251	8,629	66	665	9,207	1.9	93.7
1965	48,615	10,287	101	435	10,648	1.4	96.6
1966	48,470	10,688	93	559	11,134	1.5	96.0
1967	47,753	10,851	68	636	11,432	1.3	94.9
1968	48,622	11,196	94	717	11,815	1.3	94.8
1969	48,024	11,282	98	831	11,978	1.6	94.2
1970	47,178	11,544	124	926	12,355	1.4	93.4
1971	47,440	11,654	125	876	12,396	1.5	94.0
1972	46,845	11,921	127	1,003	12,790	1.5	93.2
1973	44,046	11,378	119	1,021	12,240	1.9	93.0
1974	48,576	12,368	75	833	13,150	1.6	94.0
1975	56,168	13,397	65	896	14,251	1.3	94.0
1976	61,413	14,411	135	1,094	15,306	1.6	94.2
1977	57,758	13,976	143	980	14,890	1.2	93.9
1978	53,584	13,380	165	1,156	14,272	1.9	93.8
1979	45,801	11,988	137	1,192	13,076	1.8	91.7
1980	46,052	12,178	146	1,028	13,073	1.7	93.2
1981	47,904	12,639	180	889	13,403	1.3	94.3
1982	50,841	12,831	211	995	13,595	1.4	94.4
1983	50,864	13,010	220	977	13,742	1.6	94.7
1984	52,367	13,242	258	953	13,918	1.7	95.1
1985	52,183	13,365	268	1,070	14,190	1.5	94.2
1986	50,951	13,527	344	1,091	14,284	1.4	94.7
1987	48,333	13,066	370	1,179	13,890	1.4	94.1
1988	49,926	13,607	399	1,260	14,445	1.5	94.2
1989	50,654	13,753	576	1,186	14,404	1.2	95.5
1990	47,351	13,178	571	1,314	13,895	1.4	94.8
1991	44,972	12,981	652	1,428	13,745	1.5	94.4
1992	45,491	13,171	761	1,458	13,895	1.3	94.8
1993	45,649	13,154	786	1,487	13,771	1.9	95.5
1994	47,066	13,907	977	1,520	14,433	2.0	96.4
1995	48,990	14,363	1,075	1,257	14,564	1.8	98.6
1996	50,261	14,547	1,177	1,273	14,710	1.3	98.9
1997	49,942	14,584	1,357	1,510	14,696	1.6	99.2
1998	48,906	14,754	1,419	1,738	15,104	1.4	97.7
1999	49,671	15,262	1,593	1,916	15,571	1.4	98.0
2000	49,630	15,444	1,653	2,058	15,804	1.7	97.7
2001	48,637	15,143	1,614	2,159	15,651	1.9	96.8
2002	47,182	14,906	1,581	2,222	15,631	1.4	95.4

표 7 세계 쇠고기 통계(남미)

연도	도축두수 (천마리)	생산량 (천톤)	수출량 (천톤)	수입량 (천톤)	소비량 (천톤)	재고율 (%)	자급률 (%)
1961	22,688	4,495	499	12	4,007	2.0	112.2
1962	24,463	4,771	662	12	4,122	2.0	115.7
1963	26,008	5,114	850	10	4,274	1.9	119.7
1964	23,019	4,573	747	17	3,845	2.1	118.9
1965	23,307	4,608	667	44	3,987	2.1	115.6
1966	24,542	4,844	698	45	4,192	2.0	115.5
1967	26,234	5,093	775	62	4,382	1.9	116.2
1968	28,081	5,444	766	55	4,734	1.7	115.0
1969	30,222	5,980	1,014	46	5,019	1.5	119.2
1970	29,984	5,809	1,013	53	4,898	0.6	118.6
1971	26,147	5,111	743	72	4,424	1.0	115.5
1972	26,886	5,444	1,073	75	4,445	1.1	122.5
1973	28,404	5,811	876	31	4,980	0.7	116.7
1974	27,772	5,586	534	66	5,101	1.0	109.5
1975	31,118	6,052	494	67	5,619	1.0	107.7
1976	33,464	6,622	895	67	5,787	1.1	114.4
1977	34,953	6,889	917	86	6,035	1.4	114.2
1978	35,445	6,925	1,002	175	6,125	0.9	113.1
1979	33,399	6,647	902	171	5,915	0.9	112.4
1980	38,364	7,807	787	121	7,162	0.5	109.0
1981	40,511	8,191	997	151	7,212	2.3	113.6
1982	38,964	7,918	1,107	119	6,968	1.9	113.6
1983	37,533	7,562	1,103	68	6,542	1.8	115.6
1984	37,507	7,589	894	37	6,752	1.4	112.4
1985	41,853	7,908	921	55	7,003	1.9	112.9
1986	42,845	8,144	843	557	7,893	1.3	103.2
1987	42,568	8,744	713	210	8,161	2.2	107.1
1988	42,884	8,848	1,041	37	7,895	1.6	112.1
1989	44,071	9,103	892	225	8,459	1.3	107.6
1990	45,034	9,273	905	262	8,677	0.7	106.9
1991	47,044	9,703	863	134	8,982	0.6	108.0
1992	47,194	9,710	868	146	8,975	0.7	108.2
1993	46,882	9,557	751	58	8,861	0.8	107.8
1994	46,988	9,634	829	110	8,891	1.0	108.4
1995	48,612	9,975	915	160	9,199	1.2	108.4
1996	50,532	10,112	915	195	9,431	0.8	107.2
1997	51,120	10,527	943	163	9,758	0.6	107.9
1998	49,603	10,219	796	153	9,576	0.6	106.7
1999	49,631	10,538	974	74	9,639	0.6	109.3
2000	51,037	10,852	1,040	88	9,902	0.6	109.6
2001	51,475	10,926	1,060	62	9,921	0.7	110.1
2002	52,515	11,247	1,174	43	10,107	0.7	111.3



표 8 세계 쇠고기 통계(아프리카)

연도	도축두수 (천마리)	생산량 (천톤)	수출량 (천톤)	수입량 (천톤)	소비량 (천톤)	재고율 (%)	자급률 (%)
1961	2,645	444	18	0	427	0.0	104.0
1962	2,721	454	20	0	435	0.0	104.4
1963	2,732	520	25	0	495	0.0	105.0
1964	2,858	495	30	0	466	0.0	106.2
1965	2,917	516	30	0	486	0.0	106.2
1966	2,976	517	46	12	483	4.1	107.0
1967	2,682	536	43	41	534	3.8	100.4
1968	2,720	531	25	47	553	3.6	96.0
1969	2,781	534	19	51	566	3.5	94.3
1970	2,876	553	27	55	581	3.4	95.2
1971	3,084	591	35	57	613	3.3	96.4
1972	3,353	649	59	55	645	3.1	100.6
1973	3,777	699	73	67	693	2.9	100.9
1974	3,330	617	41	78	654	3.1	94.3
1975	4,980	839	24	60	875	2.3	95.9
1976	4,796	845	30	74	889	2.2	95.0
1977	5,174	928	32	102	998	2.0	93.0
1978	5,451	986	41	75	1,019	2.0	96.8
1979	5,710	1,039	47	91	1,083	1.9	95.9
1980	5,763	1,120	26	134	1,228	1.6	91.2
1981	5,580	1,052	18	147	1,181	1.7	89.1
1982	5,512	1,053	14	130	1,169	1.7	90.1
1983	4,801	986	5	161	1,111	4.6	88.8
1984	4,892	1,018	2	182	1,186	5.3	85.8
1985	5,112	1,044	2	198	1,258	3.6	83.0
1986	5,151	1,046	3	241	1,321	0.6	79.2
1987	5,100	1,036	1	258	1,301	0.0	79.6
1988	4,821	1,004	1	258	1,255	0.5	80.0
1989	4,898	1,031	1	284	1,313	0.5	78.5
1990	5,121	1,069	1	153	1,218	0.8	87.8
1991	5,705	1,126	2	114	1,238	0.8	91.0
1992	5,708	1,155	2	130	1,269	1.9	91.0
1993	5,038	1,055	10	209	1,278	0.0	82.5
1994	4,512	973	3	259	1,229	0.0	79.2
1995	4,288	944	3	222	1,163	0.0	81.2
1996	4,330	951	3	185	1,133	0.0	83.9
1997	4,471	1,017	4	200	1,213	0.0	83.8
1998	4,874	984	7	194	1,171	0.0	84.0
1999	4,511	984	5	241	1,220	0.0	80.7
2000	4,758	1,072	4	233	1,301	0.0	82.4
2001	4,790	1,062	7	123	1,178	0.0	90.2
2002	4,675	1,042	7	185	1,220	0.0	85.4

표 9 세계 쇠고기 통계(오세아니아)

연도	도축두수 (천마리)	생산량 (천톤)	수출량 (천톤)	수입량 (천톤)	소비량 (천톤)	재고율 (%)	자급률 (%)
1961	7,002	970	412	0	546	7.5	177.7
1962	8,248	1,165	556	0	612	6.2	190.4
1963	8,769	1,255	610	0	648	5.4	193.7
1964	9,150	1,290	619	0	662	6.5	194.9
1965	8,924	1,240	581	0	664	5.6	186.8
1966	8,505	1,241	568	0	671	5.8	184.9
1967	8,024	1,198	515	0	682	5.7	175.7
1968	8,208	1,241	548	0	692	6.8	179.3
1969	8,854	1,355	658	0	680	9.4	199.3
1970	8,839	1,395	782	0	613	10.4	227.6
1971	8,883	1,497	875	0	633	8.4	236.5
1972	10,296	1,739	1,055	0	667	10.5	260.7
1973	11,534	1,960	1,231	0	732	9.2	267.8
1974	10,022	1,684	788	0	898	7.2	187.5
1975	13,174	2,211	1,082	0	1,090	9.5	202.8
1976	15,302	2,527	1,288	0	1,149	16.9	219.9
1977	16,362	2,716	1,522	0	1,207	15.0	225.0
1978	15,878	2,693	1,545	0	1,138	16.8	236.6
1979	13,046	2,282	1,439	0	911	13.5	250.5
1980	11,863	2,030	1,229	0	828	11.6	245.2
1981	11,143	1,919	1,058	0	868	10.2	221.1
1982	12,697	2,197	1,308	0	912	7.2	240.9
1983	11,222	1,948	1,139	0	822	6.5	237.0
1984	9,247	1,681	903	0	766	8.5	219.4
1985	9,983	1,824	1,022	0	789	9.9	231.2
1986	10,402	1,944	1,147	0	794	10.2	244.8
1987	11,377	2,112	1,340	0	767	11.2	275.4
1988	10,812	2,095	1,325	0	788	8.6	265.9
1989	10,664	2,115	1,307	0	825	6.2	256.4
1990	10,946	2,189	1,423	0	761	7.4	287.6
1991	11,141	2,259	1,508	1	751	7.6	300.8
1992	11,296	2,356	1,617	6	742	8.1	317.5
1993	11,417	2,381	1,617	11	735	13.6	323.9
1994	11,277	2,395	1,634	14	770	13.6	311.0
1995	11,021	2,347	1,605	15	751	14.8	312.5
1996	11,828	2,367	1,527	14	851	13.4	278.1
1997	12,964	2,606	1,693	12	921	12.8	282.9
1998	13,028	2,609	1,756	12	859	14.4	303.7
1999	12,244	2,514	1,712	12	859	9.2	292.7
2000	12,162	2,568	1,823	17	793	6.0	323.8
2001	12,572	2,634	1,890	17	772	4.8	341.2
2002	13,175	2,705	1,955	18	777	3.6	348.1

자료: <http://www.worldfood.muses.tottori-u.ac.jp>에서  
 (김혜영 [hykim@krei.re.kr](mailto:hykim@krei.re.kr) 02-3299-4366 농산업경제연구센터)

M45-29 세계농업뉴스 제29호 (2003. 1)

---

등 록 제6-0007호 (1979. 5. 25)

인 쇄 2003년 1월

발 행 2003년 1월

발행인 이정환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전화 02-3299-4224 팩시밀리 02-965-6950

<http://www.krei.re.kr>

인쇄처 경희정보인쇄(주) 02-2263-7534

---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 이 연구는 우리 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